

# INVENTION & PATENT

2011 April

04

발명  
특허



INVENTION & PATENT \_ Vol. 417

Special Issue  
[포커스]

애플의 특허

[현장탐방]

인하대학교  
특허교육 현장을 가다

[IP 칼럼]

이경규의 꼬꼬면,  
상표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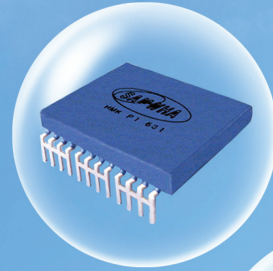




SAMWHA CAPACITOR Co., Ltd.

# Green Technology with SAMWHA

PEA (MLCC for High Power  
Electronic App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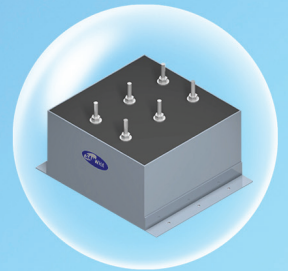
HEV (Hybrid & Electric Vehicle)  
DC link Capaci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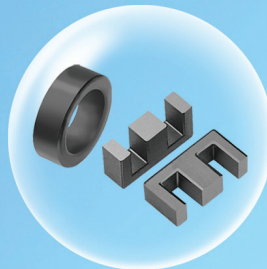
Green Cap (EDL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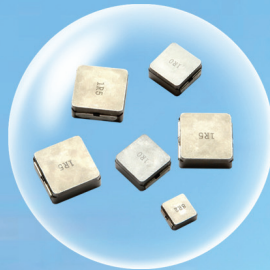
Renewable Energy Capacitors



Ferrite and  
Magnetic Powder Cores



MPC Inductors



High Voltage MLCCs



[www.samwha.com](http://www.samwha.com)

124 buk-ri, Namsa-myeon, Chein-gu, Yongin-si, Gyeonggi-do, Korea

Tel. 82-31-332-5441, Fax. 82-31-332-7661

## PRODUCT SELECTION

### DB Cr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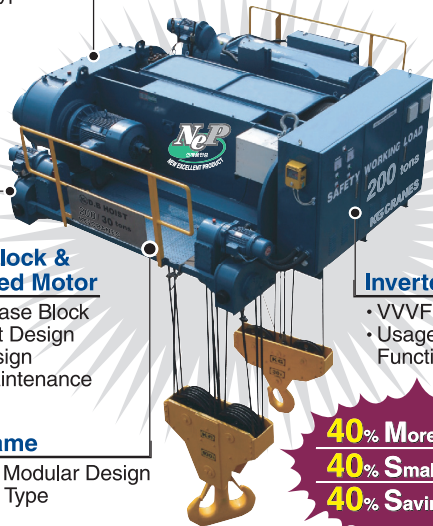
(대통령 표창, NEP 인증 제품)

#### Gear Box & DC MG Brake

- Modular Design
- Variable Speed
- Variety Type of Brakes

#### Reference

- 현대중공업 : 20,000 ton/year
- POSCO : 30,000 ton/year
- 삼성조선 : 50,000 ton/year
- American Shipyard : 5,000 ton/year
- Middle East Steel Mill : 10,000 ton/year



#### Wheel Block & TS Geared Motor

- Single Case Block
- Compact Design
- BBS Design
- Easy Maintenance

#### Inverter Panel

- VVVF Control
- Usage Memory Function

#### Main Frame

- 10Kinds Modular Design
- Package Type

**40% More Light**  
**40% Smaller**  
**40% Saving Cost**

### KGP (KG Power regeneration system)



#### KGP 도입에 의한 공간 절약



#### KGP 적용시 전기요금 절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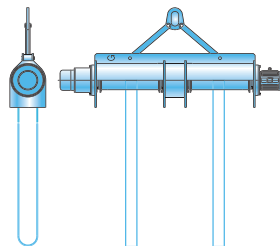
모터 용량 (KW)	고효율 호이스트 KGP적용 후 절감율(%)	절전 용량 (KW)	산업체 적용 전기요금 절감액(원)		
			3,600시간	4,800시간	5,400시간
11	11	1,21	233,917	311,890	350,876
15	11	1,65	318,978	425,304	478,467
22	17	3,74	723,017	964,022	1,084,525
37	22	8,14	1,573,625	2,098,166	2,360,437
55	21	11,55	2,232,846	2,977,128	3,349,269
90	22	19,8	3,827,736	5,103,648	5,741,604
132	22	29,04	5,614,013	7,485,350	8,421,019

• 한국고벨(주)에서 제작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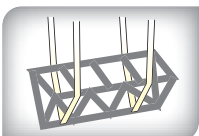
### Turning De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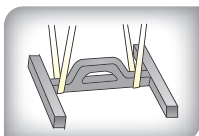
**Turn it Ea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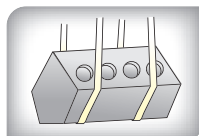
#### Application



Truss



Steel Structure



Engine Bl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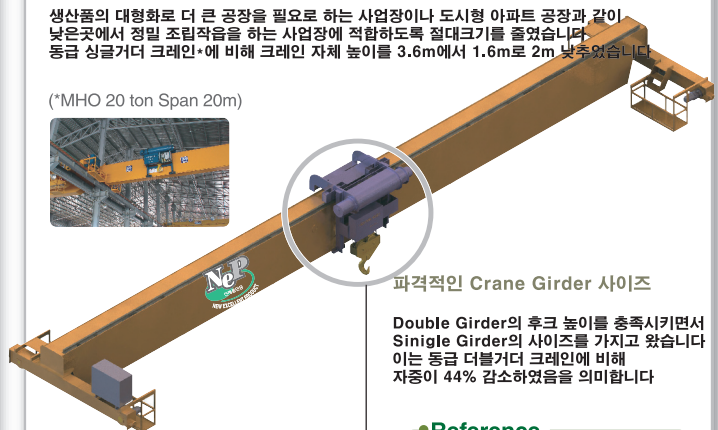
### Low Space Crane

(NEP 인증제품)

#### 건축비를 낮추는 크레인

생산품의 대형화로 더 큰 공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나 도시형 아파트 공장과 같이 낮은곳에서 정밀 조립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적합하도록 절대크기를 줄였습니다. 등급 싱글거더 크레인·에 비해 크레인 자체 높이를 3.6m에서 1.6m로 2m 낮추었습니다.

(\*MHO 20 ton Span 20m)



파격적인 Crane Girder 사이즈

Double Girder의 후크 높이를 충족시키면서 Single Girder의 사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등급 더블거더 크레인에 비해 자중이 44% 감소하였음을 의미합니다.

#### Reference

- 두산중공업 : 8,000 ton/year
- POSCO : 6,000 ton/year

VVVF Control (인버터 컨트롤) 진동, 소음, 슬립이 없어 미숙련공도 쉽게 사용하며, 안전하고 정확한 handling을 가능하게 합니다.

혁신적인 Hook 높이  
Mono Girder에서는 상상할수 없는 높이를 만족시키며, Double Girder Crane의 높이 혹은 그 이상을 만족시킵니다.

# 2011년 주요

## 국제발명품전시회 일정

### 참가전시회

전시명	전시기간	출품안내 및 접수
태국 발명가의 날 행사	2.2 ~ 2.5	1월 초
제네바 국제발명·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회	4.6 ~ 4.10	2월 말
말레이시아 국제발명품전시회	5.20 ~ 5.22	3월 말
피츠버그 국제발명투자전시회	6.14 ~ 17	4월 말
모스크바 국제발명투자전시회	미정	5월 말
대만 국제발명품전시회	9.29 ~ 10.2	7월 말
독일 국제아이디어·발명·신제품 전시회	10.27 ~ 10.30	8월 말

# 2011 아시아청소년 국제발명품전시회 출품자 모집요강

## ■ 전시명

- 2011 말레이시아 아시아청소년국제발명품전시회
- AYIE 2011 [Asian Young Inventors Exhibition]

## ■ 전시회 특징

- 10년 최초로 개최된 20세 미만 초·중·고생을 위한 발명전시회
- 10년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중국 등 청소년 참가
- 심사를 통해 금, 은, 동상 수여

## ■ 기 간 : '11. 5. 20(금) ~ 5. 22(일) [3일간]

- 신청접수 : '11. 3. 15(화) ~ 4. 29(금)

## ■ 참가발명품 : 총 10건

- 10건 초과 신청시 선정 심사를 통해 참가 발명품 선정 예정

## ■ 장 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

## ■ 주최 및 후원

- Malaysian Invention & Design Society(MINDS), Asian Caucus of Invention Associations(ACIA),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 참가 비용 : 500,000원

- 위탁참가 (발명품 1건 참가기준)

(단위 : 천원)

부스형태	부스료	판넬	번역	통역	배송비	계
1.5m × 2m	60	200	60	80	100	500

\* 발명품을 한국발명진흥회가 수령하여 참가

\* 통역비는 공동 통역 1인이 3~5개의 발명품을 담당하는 비용임

\* 배송비는 1건(10kg 이내, 30cmx30cmx30cm 이내) 금액이고 상기 기준 이상일 경우 추가 비용 개별 부담

\* 참가비는 사후정산을 통해 미사용부분 반환

## ■ 시상제도 : 금상, 은상, 동상, 특별상(WIPO 상) 등

## ■ 문의처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유주현 계장  
Tel:(02)3459-2795/Fax:(02)3459-2799/E-mail: atom@kipa.org



# 2011 말레이시아 국제발명품전시회 출품자 모집요강

## ■ 전시명

- 2011 말레이시아국제발명품전시회
- ITEX 2011 [22nd International Invention, Innovation, & Technology Exhibition]

■ 기 간 : '11. 5. 20(금)~5. 22(일) [3일간] \* 부스설치 : 5. 19(목)

■ 장 소 : Kuala Lumpur Convention Centre

■ 규 모 : 8개국 536여 점(2010년)

## ■ 주최 및 후원

- Malaysian Invention & Design Society(MINDS)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발명가협회연맹(IFIA)

## ■ 전시형태

출품명의	개인명의	기업명의
전시원칙	1부스 1건 가능	1부스 2건 가능
부스크기	2m(가로) x 2m(세로)	3m(가로) x 3m(세로)
제공사항 (공통)	진열대 1개, 의자 2개, 바닥카펫, 조명 2개, 네임보드, 휴지통, 저녁식사권(1매)	

※ 상키부스의 별도의 추가부스 사용가능 (신청서에 별도 표기 요함)

■ 시상제도 : 대상(WIPO 골드메달), 금상, 은상, 동상 및 특별상 등

※ '10년 한국 : 6사(명) 7건, 금상 2, 은상 3, 동상 2, 특별상 4 수상

## ■ 참가비용

- 직접참가 (전시 및 1인 현지 참가기준)

부스종류	부스크기	출품명의	참가비
기본부스	4m(2m x 2m)	개인	4,700,000원
	9m(3m x 3m)	기업	6,700,000원

부스료, 판넬제작비, 통역비, 공동경비, 여행경비(항공, 숙박 등) 포함

- 위탁참가 (1건 위탁전시 기준)

부스종류	부스크기	출품명의	참가비
기본부스	4m(2m x 2m)	개인	3,300,000원
	9m(3m x 3m)	기업	5,300,000원

## ■ 출품자 모집

- 모집기간 : 2011. 3. 15(화) - 4. 29(금)
- 신청방법 : 별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직접제출 또는 우편신청(신청 서류는 email로도 송부)
- 입 금 처 : 신한은행 140-003-806543(예금주: 한국발명진흥회)
- 문 의 처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유주현 계장  
Tel:(02)3459-2795/Fax:(02)3459-2799/E-mail: atom@kipa.org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 배제품으로 신청한 경우 즉시 환불함



# 2011 피츠버그 국제발명품전시회 모집요강

## ■ 전시명

- 2011 피츠버그국제발명품전시회
- INPEX 2011 (INVENTION & NEW PRODUCT EXPOSITION)

## ■ 기 간

- '11. 6. 14(화) ~ 6. 17(금) [4일간] \* 부스설치 : 6. 13(월)

## ■ 장 소

- The Monroeville Convention Center

## ■ 규 모

- 16개국 278여 점(2010년)

## ■ 주최 및 후원

- ISC(Invention Submission Corporation)

## ■ 모집기간

- 4월~5월 말

## ■ 참가비용 : 미정

- '10년, 직접 : 860만 원, 위탁 : 560만 원

## ■ 문의처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유주현 계장  
Tel:(02)3459-2795/Fax:(02)3459-2799/E-mail: atom@kipa.org

#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목적

- 과학관을 활용한 발명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 창의 인재육성을 위한 융합형 발명교육 추진

## ■ 근거

- 발명진흥법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
- 발명진흥법 제7조(학생발명 활동의 촉진)

## ■ 사업개요

-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2011년부터 창의적 재량활동 수업시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과 함께 창의력 기반의 발명-과학 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천과학관의 다양한 과학체험시설 및 인프라를 활용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명교육컨텐츠를 제공하여 아래와 같은 체험형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본	심화	캠프
교육대상	초등 3~6학년	초등 4~6학년	초등 3~6학년
교육기간	매월 2, 4주 토요일	매주 일요일	매월 2주 토~일요일
교육시간	09:00 ~ 12:00 13:00 ~ 16:00	09:00 ~ 12:00 13:00 ~ 16:00	토요일 15:00 ~ 익일 12:40
교육정원	1회 20명	1회 20명	50명
교육장소	국립과천과학관 교육동 8실험실		국립과천과학관 엔씨홀, 캠프장

※ 각 과정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http://www.kipa.org))에서 신청받고 있음.

☎ 문의전화: 02-3459-2757



# 2011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안내(상반기)

## ■ 목적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우수발명품에 대한 정부·공공기관 납품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

## ■ 신청 자격

-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심사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상기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본사업신청 동의서 첨부 요망)
  - ※ 1999. 7. 1 ~ 2006. 9. 30 사이에 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된 기술은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권리에 한함
-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 1사 1제품에 한함

## ■ 우선구매추천체계

- 추천 절차



-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출연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 심사기준
  -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 구매효과성 : 대체우위성, 가격경쟁력, 시장성
  -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사업화 추진능력, 구매실효성
  - 신청권리대비 제품의 연관성 등
- 선정 시 혜택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서 발송
  -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기술성 평가를 일부 면제 받을 수 있음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 신청서 배포 및 접수처

- 신청접수기간 : 3월 23일(수) ~ 5월 17일(화) 도착분에 한함(상반기 마감)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우선구매추천사업 담당자)
  - e-mail : hjyon@kipa.org
- 신청 시 구비서류
  - 우리회 홈페이지 www.kipa.org 내 사업공고에서 모집요강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특허등록원부 등본, 등록특허공보 사본,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제품 카탈로그, 공장등록증 또는 OEM 생산계약서 각 6부
  - 심사가점대상 및 인증현황에 대한 증명서는 반드시 첨부할 것

##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전화 : 02-3459-2798)

# 『대학 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프로그램(T3)』 운영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추진하는 전국 대학 교수의 지식재산권 역량강화를 위한 『2011년 대학 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목 적

- 지식재산권 창출의 핵심인력인 대학교수의 지식재산권 역량강화
- 중장기적 대학별 자립형 지식재산 강의 기반 구축

## ■ 주요내용

대상	과정명 (일정)		프로그램 (내용)
기본	찾아가는 과정 4월 ~ 6월 (4개 대학, 학교별 4주~8주)		국내·외 지식재산 제도, 특허명세서, 특허정보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및 사업화 방안,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연구개발 창출 기법
	상반기 단기 집중 과정	지식재산권 기본 4. 18 ~ 4. 20	창의적 연구개발 기법(Triz) 및 지식재산권(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입문
		디자인·상표·저작권 4. 20 ~ 4. 22	디자인보호법(디자인요건, 특수디자인, 보호 및 활용), 상표법(상표요건, 상표권의 보호 및 활용), 저작권(저작권법 개요, 저작권의 보호 및 활용 등) 개요
중급	여름 단기 집중 과정	특허정보조사·분석 8. 22 ~ 8. 24	특허검색 DB 소개 및 활용 방법, 특허기술 검색식 작성 노하우, 특허 data 가공방법 및 특허 분석 방법 (개인프로젝트: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강한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8. 24 ~ 8. 26	특허요건, 명세서의 개요, 특허 청구범위 작성 및 분석, 주요 거절 이유 소개 및 대응방법 (개인프로젝트: 특허 청구범위 작성)
	하반기 단기 집중 과정	지식재산 사례 연구 10. 24 ~ 10. 26	전공 분야별(기계, 전기전자, 화학) 지식재산 사례 소개 및 학습 (개인 프로젝트: 사례 연구 및 의견 제시)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라이선싱 10. 26 ~ 10. 28	특허기술 가치평가 방법 소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팀프로젝트: 전공 분야별 특허기술 가치평가)
고급	지식재산 마스터 과정(IP 교수법) 12. 5 ~ 12. 9		학교(학과) 맞춤형 커리큘럼, 콘텐츠, 교수법 개발 (개인 프로젝트: IP 시범수업)
	해외 심화 과정 7. 13 ~ 7. 26		교수들이 알아야할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동향 소개 및 해외 우수 IP 기관 방문

\* 참여인원, 장소 등은 각 과정 시작 1개월전 공지

## ■ 교육방법

- 찾아가는 과정 : 대학 방문 교육(4학교 선정, 4주~8주 강의)
- 단기집중 과정 : 집체 교육(과정별 2일~5일)
- 해외심화 과정 : 해외 우수기관 연수기회 제공

##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교육 1달 전에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http://www.kipa.org) ) 사업안내 공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won@kipa.org](mailto:won@kipa.org) ) 접수
- 문 의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T. 02-3459-2808)



# 2011년 신규 이러닝 교육과정 안내

당신을 지식재산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TRIZ를 활용한 기술혁신

분량	15차시
학습방법	플래시 애니메이션

### 콘텐츠의 특징

본 과정을 통해, 최근 기업 내 문제해결방안 도출용도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아이디어 발상기법 TRIZ의 기초적인 개념 및 이론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표준특허 이론과 사례

분량	7차시
학습방법	플래시 애니메이션

### 콘텐츠의 특징

본 과정을 통해, 표준특허에 관한 이론 및 사례, 국내외 현황에 관해 학습함으로써, 표준특허의 의의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표준특허의 획득절차 및 창출방안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MICE산업과 지식재산

분량	5차시
학습방법	플래시 애니메이션

### 콘텐츠의 특징

본 과정을 통해,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s)산업과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에 있어 MICE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고려사항 및 유의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경영과 특허전략

분량	5차시
학습방법	플래시 애니메이션

### 콘텐츠의 특징

본 과정을 통해, 국내의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특허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기업 내 특허전략의 중요성을 이해함과 더불어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본과정 이외에 2011년 현장 동영상 신규과정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괴물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전략/인터넷과 지식재산권/국제특허분쟁에서의 비침해분석 및 무효주장/중소기업의 라이선스 협상전략/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기후변화, 기술이전 그리고 IP/연구계약의 이론과 실제/IP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특허경영전략

본 과정은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www.ipacademy.net)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기업체(연구소) 등의 지식재산 이러닝 지원 안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을 받고자하는 기업체(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이러닝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업목적

지식재산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업(관)을 대상으로 교육의 편의성 및 효과성을 고려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기여

## 사업대상

온라인 단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중소·대), 연구기관, 공공기관

## 교육비

전액무료

## 교육형태

온라인 교육

## 지원내용

### 전용사이트 제공

- 기업(관)명.ipacademy.net ex)hyundai.ipacademy.net
- 해당 기업체 전용 사이트 개설

### 온라인 교육과정 제공

- 전체 61개 과정 '사례로 배우는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등
- 교육상담을 통하여 전체 과정 중 귀 기업(관)에 필요한 과정만을 재구성하여 맞춤 과정 제공

### 체계적인 학습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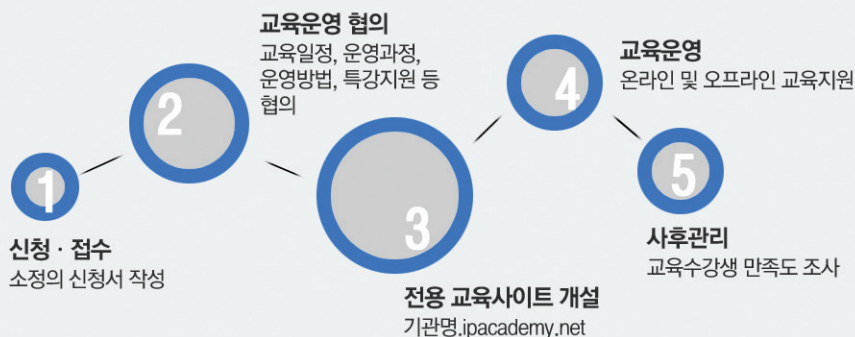
-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하여 질의응답 제공
- 직무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학습관리

### 오프라인 방문 특강 제공

- 온라인 교육상에 부족한 부분을 오프라인 방문 특강을 통하여 보충교육 실시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을 위주로 맞춤형 교육 실시
- ※ 교육신청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실시



## 처리절차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www.ipacademy.net](http://www.ipacademy.net)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
- 접수처 : E-mail [elnino82@kipa.org](mailto:elnino82@kipa.org), Tel 02-3459-2776, Fax 02-3459-2789

2011


#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 대한민국 여성발명품박람회




## KOREA INTERNATIONAL WOMEN'S INVENTION EXPOSITION

전 세계 여성발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명아이디어를 겨루는 「2011세계여성발명대회」와  
톡톡 튀는 여성 생활발명품과 아이디어 제품이 전시되는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가 개최됩니다.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세계 최대의 여성 발명 축제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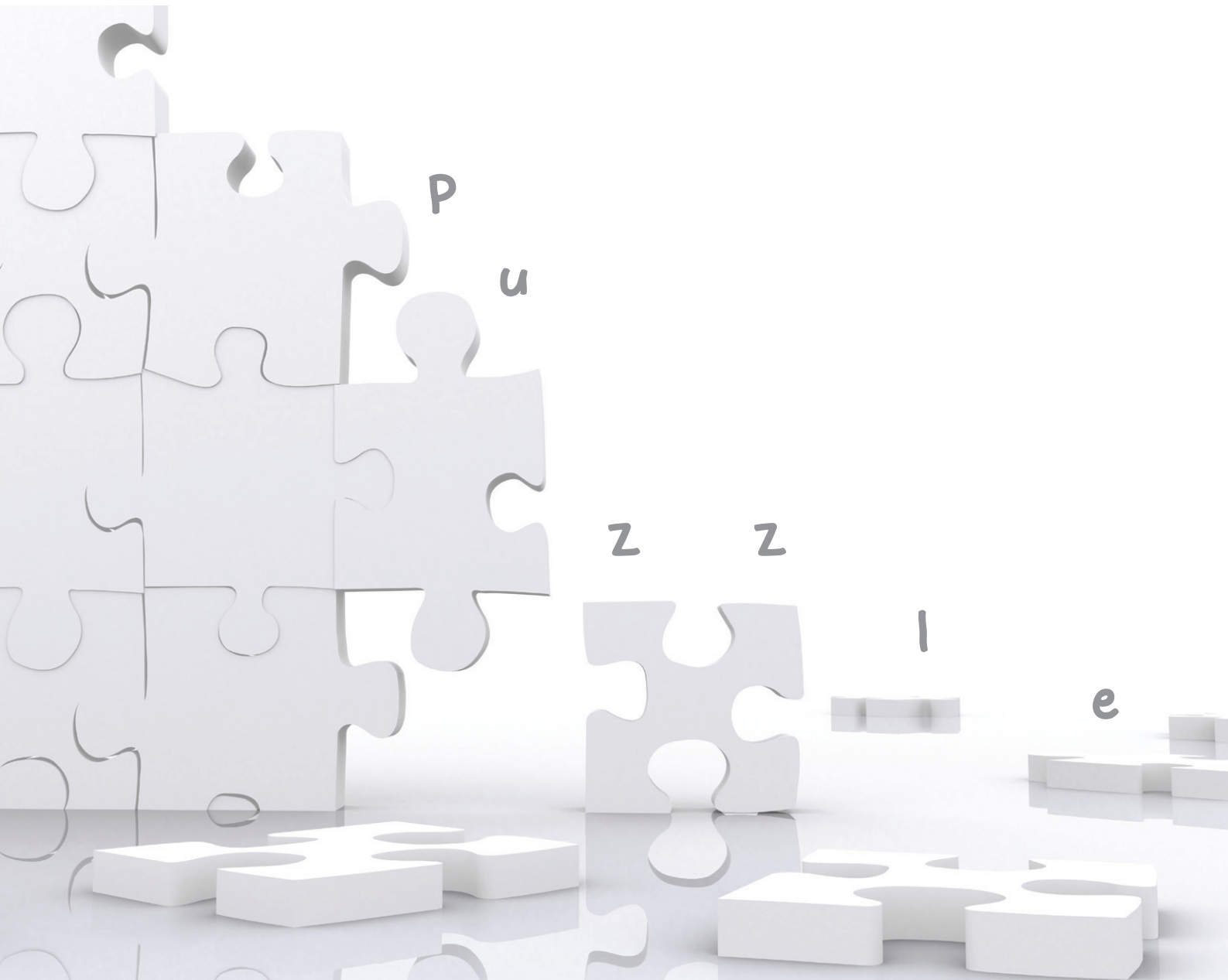
### 2011. 5. 4(수) ~ 5. 7(토), 코엑스 1층 A홀

**개막식** 2011. 5. 4(수) 10시 30분, 코엑스 1층 A홀 입구  
**시상식** 2011. 5. 7(토) 16시, 코엑스 A홀 전시장내 무대  
**2011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포럼**  
2011. 5. 6(금) 10:00~16:00,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다양한 체험·경품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입장 (관람시간 10:00~18:00), 디렉토리 무료배포  
문의처 : 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 / 전시사무국 02-780-0863

**주 최 :**  특허청  
**주 관 :**  한국여성발명협회  
**후 원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국가브랜드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한국특허정보원,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WWIEA), 국제발명가협회연맹(IFIA)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공간에서 기업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 (남·여)

주소: .....

전화: ..... HP

□□□ - □□□

받는 사람

월간 **발명특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18F 발명진흥팀

1 3 5 - 9 8 0



• 이번호 내용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기사와 아쉬웠던 점은?

.....  
.....

• 앞으로 꼭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  
.....

• 기타 「발명특허」에 하고 싶은 말씀은?

.....  
.....

4월호 퍼즐정답

1	2		4		5	
	3					
8					6	7
9	10			13		
			12			
11					15	
			14			



# 2010 중국전리심사지침 개정판 출간안내



구입문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김민국 주임 (02-3459-2797)  
eldaah7@kipa.org

## 책소개

우 리회는 특허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중국에서 특허출원을 할 경우, 중국전리심사제도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2010 중국전리심사지침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2007년 최초 출판된 「중국전리심사지침서」의 중국전리심사지침 및 중국전리법의 대폭적인 개정에 따른 중국 특허심사에 대한 지침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대중국 특허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허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0 중국전리심사지침 개정판」은 제1부(초보심사), 제2부(실질심사), 제3부(국내단계진입 국제출원의 심사), 제4부(복심 및 무효심판청구의 심사), 제5부(전리출원 및 사무처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당 판매가격은 50,000원이다.

## 219개국 해외상표등록가이드

21 세기 상거래의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진출 국가에서의 상표권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진출국가의 상표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Kims and Lees)의 김윤배 변리사와 김선령 변호사가 집필한 해외(219개국)상표등록가이드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세계 219개 주요국가의 상표관련 제도를 집약한 해외출원 안내서로서, 전 세계를 서부&중부유럽, 동부유럽&중앙아시아, 중동&마그레브(북아프리카), 북미&남미 등 9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상표제도의 특징과 함께 개별국가의 상표출원·등록·심판제도를 구체적으로 해설하여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표에 관한 주요 조약의 현황과 내용, 해외상표출원과 사후관리, 마드리드 방식에 의한 국제상표출원 등 국제상표제도의 기본 개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양장 컬러판으로서 상표제도뿐만 아니라 국가별 일반현황에 대한 정보를 원색지도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종합적 상표전략 수립과 해외상표출원 및 등록관리의 지침서로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편 상표제도 및 상표출원실무해설(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절차 포함)

제 2편 ① 글로벌 상표제도 개요

② 전세계 9개 권역의 권역별 상표제도 개요

③ 219개국의 국가 현황 및 상표출원 절차

제 3편 ① 상표 관련 주요 조약 현황 및 해설

② 해외 상표 출원, 등록과 사후관리와 관련한 용어 해설



공 저 \_ 김윤배, 김선령  
도서출판 \_ 집문당(02-743-3192~3)

# Contents

## IP Report

18	포커스	애플의 특허
24	IP-Trend	스마트폰 앱 개발자들을 위한 특허이야기
29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지재권일반, 특허, 상표
30	특허확대경	특허소송 관할집중
34	시선집중	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안의 고찰
40	Zoom in	건설기술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서 특허활용실적 소개

## IP Column

46	현장탐방	인하대학교 특허교육 현장을 가다
51	특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2	IP 칼럼	이경규의 꼬꼬면, 상표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55	발명 365	지우개 달린 연필
56	지식재산 경영전략	엘 시스템아, 베네수엘라 경제학자의 조직경영론
64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	(주)타코스

## IP Information



70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경상북도(안동사과), 전라남도(구례산수유)
72	건강하게 삽시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계속 확산되어야 한다
74	KIPO NEWS	특허청 소식
77	재미있는 퍼즐	함께 풀어봅시다
78	KIPA NEWS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83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3월 신규 회원가입사 소개

Invention & Patent April 2011 Vol. 417

발행일 2011년 4월호 제36권 제4호(통권417호) 발행처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_ 우 135-980) 02)3459-2800(대) 발행인/편집인 허진규  
인쇄인 이평원 인쇄처 휘문인쇄사 (02)2276-1234 인쇄 2011년 4월 1일 발행 2011년 4월 6일 한국발명진흥회 회지 월간 발행특허  
• 본지는 한국도서접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와 본회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Report

- 포커스
- IP-Trend
-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특허확대경
- 시선집중
- Zoom in



# 애플의 특허

## 정 부 언

현실향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지식재산네트워크(IPMS)  
분쟁컨설팅분과 소속  
서울경기지식재산센터 전문위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문위원  
삼성전자 연구원



최근 IT 시장의 중심 화제는 애플의 『iphone』, 『ipad』, 『ipod』로 대표되는 스마트 기기라 볼 수 있으며, 이들 기기 모두는 애플의 전적인 힘에 의하여 시장이 개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플은 IT 시장의 혁신 아이콘으로 부상하면서 최근 비즈니스위크 최고 기업으로도 선정되었고, 2011년 2월의 전망에 의하면 애플은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을 지닌 기업으로 등극할 전망이다<sup>1)</sup>. CNBC 방송은 애플리스트들이 애플의 최근 분기 실적을 검토한 결과 향후 1년간 이 기업의 예상 주가를 32%나 올려 주당 평균 467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으며, 예상대로 주가가 오를 경우 애플의 시가총액은 4천 337억 달러가 돼 현재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엑손 모빌의 4천232억 달러를 뛰어넘게 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로서, 애플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다른 이면은 애플이 현재 처한 특허소송이다. 애플의 급격한 매출 증대에 따라, 경쟁제조기업 또는 비생산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은 특허를 통한 견제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러월드<sup>2)</sup>는 애플의 커버플로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

1) 출처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2090010>

2) 미러월드는 데이비드 젤러터 예일대 컴퓨터공학 교수가 설립한 회사로, 애플의 아이팟, 아이폰, 맥 컴퓨터가 스크린에 문서를 나타내는 기술을 구현할 때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하드웨어 내 문서 검색 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 백업 시스템 타임머신, 책장을 넘기듯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할 수 있는 커버 플로 등 맥 운영체제(OS)의 주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는 것을 이유로 특허소송을 진행하였고 미국법원은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하면서 총 6억 2,550만 달러(약 7,074억 4,050만 원)에 이르는 보상금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애플은 “미러월드가 문제를 제기한 세 개의 특허 중 두 개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서 배심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평결을 긴급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sup>3)</sup>.

이러한 소송을 포함하여, 애플은 최근 2년 동안 무려 20개가 넘는 특허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특허소송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제조기업, 부품(소프트웨어)기업, 비생산기업과 같이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

<표 1> 애플사가 진행 중인 특허소송

특허소송분류	분쟁업체
제조기업과의 소송	노키아, HTC, 모토로라, ...
부품(소프트웨어) 기업과의 소송	엘란, 코닥, 시넵틱스, 실리콘그래픽스, 미러월드, VirnetX, MONKEYmedia, ...
비생산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과의 소송	NTP, SmartPhone Technology, ...

### 애플의 특허소송대응

애플은 특허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소송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허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제조기업, 부품(소프트웨어)기업 또는 비생산기업 중 어느 곳인가에 따라 그 대응방식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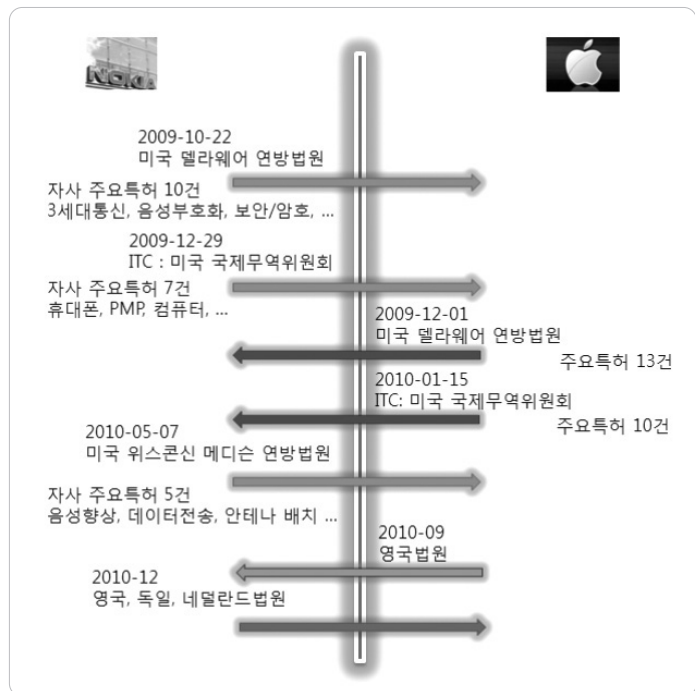
우선 애플은 제조기업과의 특허소송에서는 카운터클레임(즉, 맞소송)을 통해서 분쟁해결을 모색하

고 있고, 부품(소프트웨어)기업 또는 비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조기협상 또는 무효 이슈를 발굴함으로써 분쟁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애플은 노키아와의 특허분쟁을 다음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에서 약 9개의 소송 및 맞소송으로 분쟁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경과로는, 애플사에게 다소 불리한 것으로 전망되나 맞소송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예를 들어, 애플은 국내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는 특허소송이 아닌 협상을 통해 비공개 조건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로열티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sup>.

<그림 1> 애플 v. 노키아 특허소송



### 애플의 특허전략

애플은 많은 특허소송을 경험하면서 자사의 기술을 철저하게 특허로서 보호받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등록특허는 약 3,800건 정도로 추정된다. 특허기술은 디스플레이 분야, 인터페이스 분야, 주변기기 분야, 광고 분야, 카메라 분야, 재료 분야, 보안 분야, 운영체제 분야, 위치 기반 서비스 분야, 그린에너지 분야, 근거리무선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분야,

3) 출처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10050156>

4) 출처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71088](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71088)

TV 분야 등 매우 다양하게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중 실제 소송에서 사용되었거나 몇 가지 재미있는 애플의 특허 발명 몇 가지를 살펴보자.

(1) 빛 감지형 디스플레이 기술 - USP 7,880,733 및 USP 7,880,819

- 빛을 감지하는 디스플레이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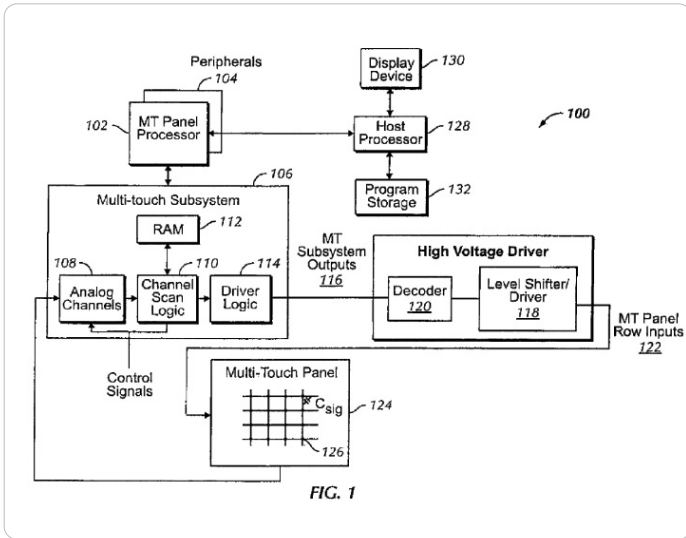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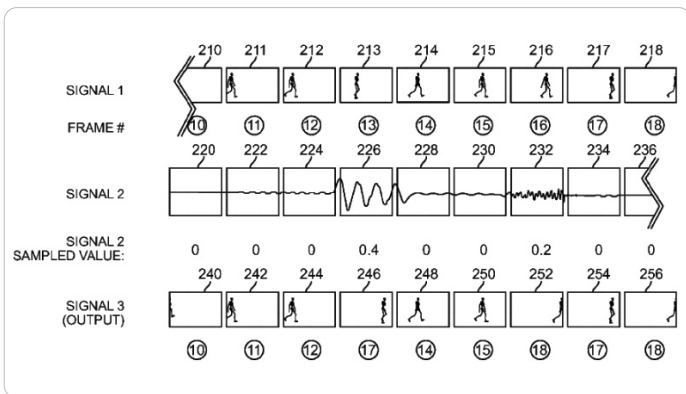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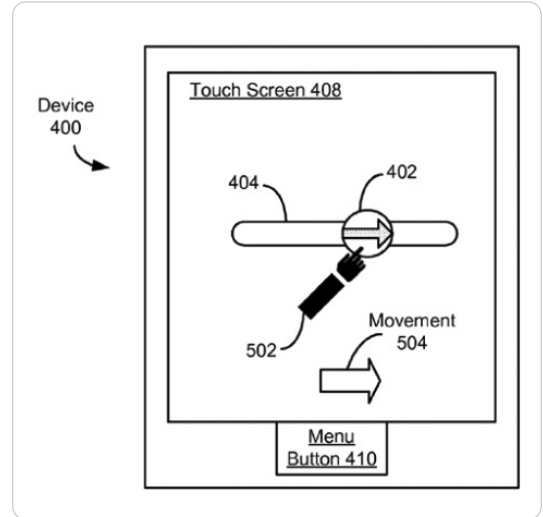
(2) 동적으로 생성되는 벨소리 기술 - USP 2011-0051914

- 발신자에 따라 각자 다른 동영상 벨소리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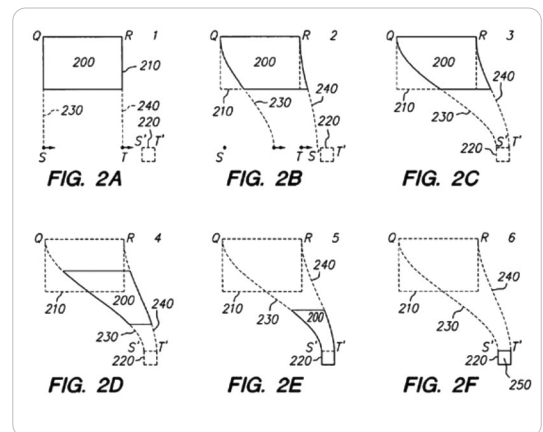
(3) 언락 이미지 상에 제스처를 수행함으로써 기기를 언락하는 기술 - USP 7,657,849

- 터치스크린 오동작을 방지하고자, 사용 전에 락을 푸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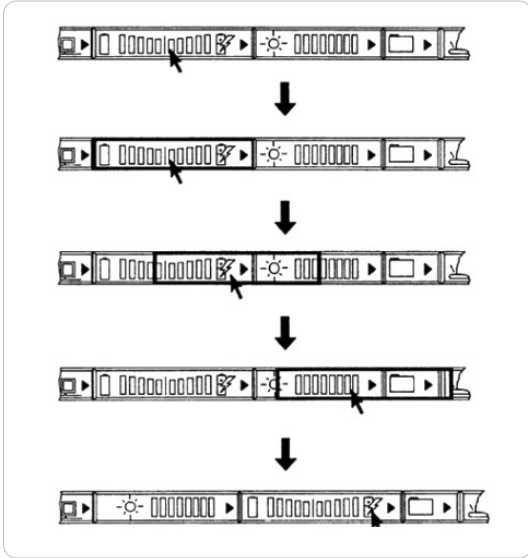
(4) 상태들 사이에서 UI 객체들의 시간 기반 및 비항속 변환 기술 - USP 7,362,331

- 윈도우의 최소 및 회복 상태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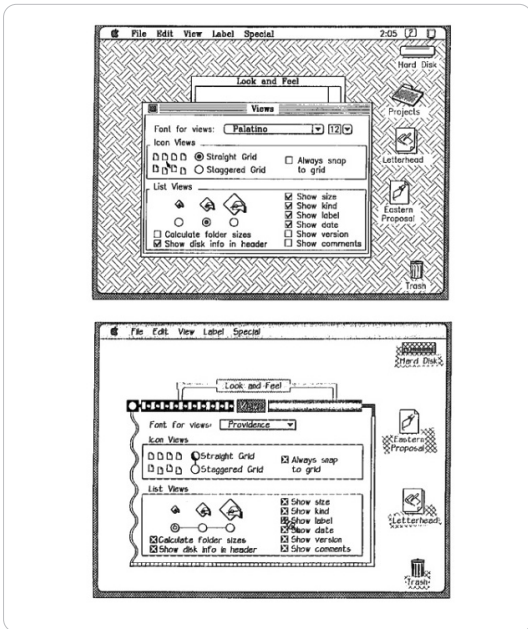
(5) 컴퓨터 시스템에서 제어 및 상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접근하는 장치 - USP 6,493,002

- 컴퓨터 디스플레이 하단에 있는 작업표시줄의 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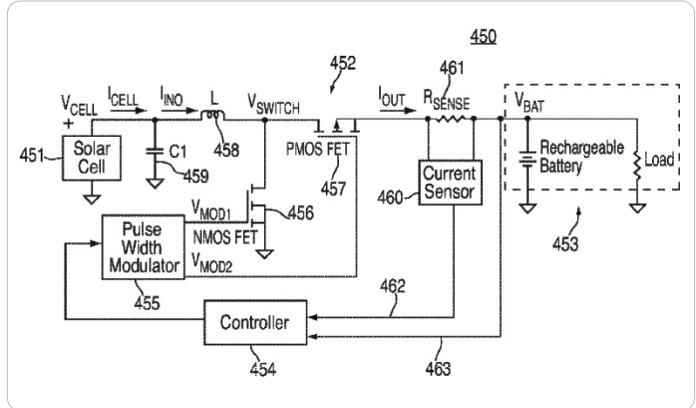
(6) GUI 상의 패턴과 컬러 추상화 기술 -  
USP 6,239,795

- 윈도우의 테마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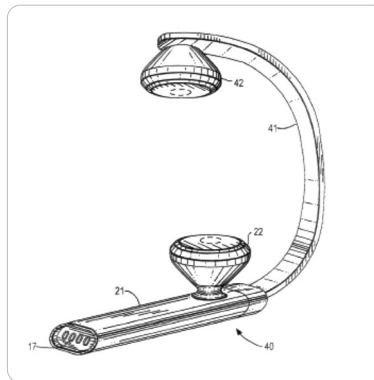
(7) 다수의 전력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휴대장치 -  
USP 7,868,582

- 전지판으로부터 얻은 태양광 에너지를 단말기에 맞게 변환 처리, 배터리 전원으로 공급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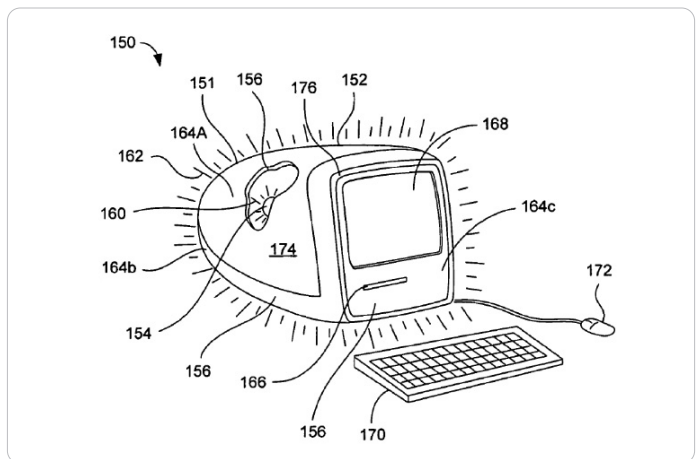
(8) 무선 헤드셋 MP3 플레이어 기술 - USP 2009-  
0268921

- MP3 미디어 플레이어와 보이스 메모, 휴대폰 통화 내 용 저장 기능 탑재, 휴대폰으로 수신한 음성 메일 메시지를 헤드셋에 업로드해 오프라인으로 재생하는 기술



(9) 컴퓨팅 기기를 위한 액티브 인클로저 기술 - USP  
7,766,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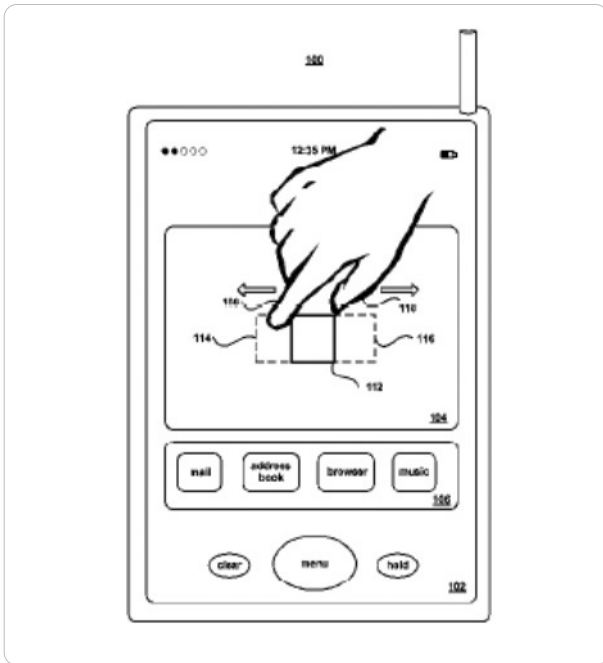
- 컴퓨터가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물리적으로 바꾸는 기술



## (10) 멀티터치 입력을 가지는 휴대형 전자 기기 기술

- USP 7,812,826

- 핀치투줌(Pinch-to-zoom)에 관련된 멀티터치 기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플은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취득하였고, 이들 특허 중 다수는 미래에 상당히 채택될 만한 좋은 기술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특허로 애플이 생각하는 미래사업을 살펴보면, 애플은 기존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기술(예를 들어, 카메라, 보안, 태양광 분야, 스마트의류 등)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결론**

현재 애플은 미국의 등록특허 3,784건과 공개특허 2,124건(총 5,908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특허는 단순히 컴퓨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특허를 출원하여 미래의 IT 산업발전을 예측하고 이러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애플의 다양한 기술을 살펴보면, 미래의 IT 산업은 기존 IT 산업의 확대는 물론 전통적으로 IT와 관계없는

분야(예를 들어, 자동차, 조선, 의류, 의료서비스, 건축, 전기설비, 유통, 금융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기업이 보다 넓은 관점에서 IT 융합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글로벌 시대의 경쟁에 뒤쳐질 수 있으므로 미래의 IT 산업 발전에 따른 준비를 차분히 할 필요가 있다. 2011. 4 |

# 지금까지 없었다, 모두가 기다렸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 시작!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 정보의 외부 유출없이  
존재시점과 위·변조 여부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  
지금 만나보세요

[www.tradesecret.or.kr](http://www.tradesecret.or.kr)

##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란

- 영업비밀로 보관되고 있는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활용하여 영업비밀 보유시점과 원본여부를 입증해 주는 서비스

### ※전자지문이란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코드로 다른 전자문서는 서로 다른 전자지문을 가짐

## 특장점

- 한국특허정보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서비스
- 원본 제출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함으로써 증명과정에서 비밀정보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
- 다양한 형태의 전자파일(한글, MS워드, 엑셀, 이미지, 동영상 등) 지원
- 인터넷만 연결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 가능

## 활용처

-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아이디어 자료, 연구노트, 설계도면, 거래 실적, 재무자료, 투자계획, 마케팅 자료, 고객정보, 계약서 등
- 기타 원본증명이 필요한 모든 전자문서

# 스마트폰 앱 개발자들을 위한 특허이야기



윤 의섭

헨트허법인 유니스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및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다수의 정부 및 민간 프로젝트 수행)



처음 아이폰이 나왔을 때만 해도 그냥 디자인 괜찮은 휴대폰이 하나 더 나왔구나 하는 생각 정도였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었다. 전화기 기능이 있는 PC? 그것도 아니었다. 스마트폰은 한마디로 “이거다” 라고 규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쓰는 사람의 목적과 기호에 따라 전혀 다른 물건으로,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고,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계속 진화하고 변모하는 물건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스마트폰이란 것이 하드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강력한 센서들의 집합체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센서와 디바이스들을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제어하고 응용하여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은, 심지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들조차도 상상 못했던 놀라운 물건으로 변모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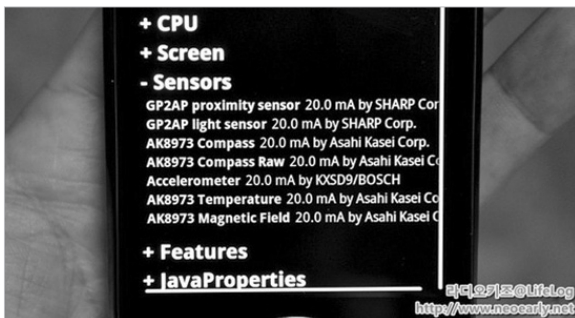
## 스마트폰에 내장된 대표적인 센서들

- 근접센서 (Proximity Sensor) : 폰이 얼굴과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를

감지. 예를 들어, 폰을 귀에 가까이 가져가면 자동적으로 화면을 오프시켜 배터리 수명도 절약하고 특히 화면 상의 버튼이 잘못 눌러져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준다.

- 모션센서 / 가속도센서 (Motion Sensor / Accelerometer) : 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또 움직이는 속도와 상태를 감지. 예를 들어 폰을 기울임에 따라 화면이 가로 또는 세로로 방향 전환되도록 해준다.
- 밝기센서 (Ambient Light Sensor) : 현재 주위가 얼마나 밝은지를 감지. 주위가 밝으면 화면 밝기를 조절하여 배터리 수명을 절약한다.
- 컴파스 (Compass) : 북쪽이 어느 쪽인지를, 즉 현재 방위를 감지. 그 자체로도 디지털 나침반 기능을 제공하지만, GPS와 함께 네비게이션, 증강현실을 응용한 다양한 기능에 활용된다.
- 자이로스코프 (Gyroscope) : 아이폰 4에 새로이 내장된 센서. 3-축 자이로스코프는 가속도 센서와 함께 폰의 X, Y, Z축 3차원 움직임과 움직임의 세기, 속도 등을 감지. 닌텐도 Wii의 리모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외에도, 온도센서 (Temperature Sensor), 습도센서 (Moisture Sensor), 자기장센서 (Magnetic Sensor) 등이 있다.



갤럭시 A에 적용된 센서들

이 정도면 현존하는 거의 모든 센서들이 총망라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눈에 해당되는 카메라, 촉각에 해당되는 터치스크린, 입에 해당되는 스피커, 귀에 해당되는 마이크 그리고, 브레인(뇌)에 해당되는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갖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센티미터 단위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무선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과 연결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지식과 정보에 실시간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센서와 디바이스들을 자유롭게 제어하며 조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에 우리들의 상상력이 더해지게 되면, 새로운 물건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롭지 않다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기능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특허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만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확보될 수 있는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앱개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앱개발자로부터 흔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앱을 개발하려하는데 반드시 특허를 내야합니까? 솔직히 앱이 시장에서 성공할 지도 미지수이고, 성공한다 해도 수명이 길어봤자 수개월에서 1, 2년 정도인데, 특허받을려면 거의 2년은 걸리고, 특허나오면 제품은 시장에서 이미 사라질 수도 있는데, 특허는 그냥 놔두고 제품이나 제대로 개발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위 논리는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 “제품 = 특허”로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절대로 제품과 특허는 같은 것이 아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지더라도 특허는 끝까지 살아남는다. 특허가 된다는 것은 앱 자체 뿐 아니라 그 앱을 통해 구현된 개념과 사상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앱은 물론 그와 비슷한 모든 앱, 기능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후속 앱, 그리고 기종과 OS에 상관없이 모두 보호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특허의 클레임이 제대로 작성되어있을 때의 얘기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스마트폰 앱에 대해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제품개발과 상품화는 둘째 문제이고, 우선 특허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줘야 한다고…….

다음의 몇 가지 예들을 보면, 스마트폰에서 개발된 앱들이 어떻게 특허로 권리화될 수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 스캔서치 (Scan Search)

스캔서치라고 하는 조금 신기한 증강현실 앱이 있다. 카메라를 이용해 CD나 도서, 포스터 등을 촬영하면 그 이미지가 스캔된 후, 인터넷망을 통해 바로 검색이 되어 나온다. 즉 도서의 경우, 리뷰, 평점은 물론,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그 책을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서점 위치까지 검색되어 나온다.



스캔서치를 이용한 Book 정보

### 스캔서치를 특허로 권리화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스캔서치는 카메라와 GPS가 내장되고,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디바이스에 있어서, 검색하고자 하는 대상을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와 사용자의 현재 위치정보 데이터를 서버에 송신하면, 서버에서는 이와 매치되는 이미지를 찾은 후 서버에 저장된 부가적인 정보를 모바일 디바이스에 제공하는 장치로 규정하여 권리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제로 스캔서치에 대해 특허를 냈는지 어쨌든 지는 확인해보지 않았다.)

### ■ 오카리나 (Ocarina)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개가 다운로드됐다고 하는 대표적인 악기앱이다. 화면에 표시된 운지점을 손가락으로 눌러 음을 지정하고, 마이크의 입김을 감지하여 오카리나 소리를 재생하며, 음악을 연주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스마트폰의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 오카리나를 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연주한 곡을 서로 재생해서 들어볼 수도 있게 해준다.



오카리나 역시, 터치스크린, 마이크, 스피커, 네트워크 등의 구성요소를 잘 조합하여 권리화할 수 있으며, 여기에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을 결합하면, 또 다시 많은 특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 QR코드리더 (QR Code Reader)

QR코드리더와 모바일태깅(Mobile Tagging)도 마찬가지이다. QR코드가 스마트폰을 만나기 전에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부품관리를 위해 만들어낸 평범한 2차원 코드시스템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QR코드에 URL을 담게 됨에 따라, 스마트폰 상에서 바로 웹페이지와 연동될 수 있게 되어 갑자기 대단한 것이 되어버렸다. QR코드 자체는 덴소 (Denso)에서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선포했다지만, QR코드와 스마트폰이 결합된 지금과 같은 이 앱과 서비스는 충분한 강력한 특허가 될 수 있다.



### QR코드리더를 권리화 하려면?

소정의 URL에 해당되는 문자정보를 포함하는 QR코드, 카메라가 내장되고 무선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디바이스, QR코드에 포함된 문자정보를 판독한 후, 유저의 확인을 거쳐 무선네트워크를 통해 지정된 URL에 접속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디바이스의 화면상에 표시하는 장치로 규정하여 권리화할 수 있을 것이다.

#### ■ 카디오 트레이너 (Cardio Trainer)

카디오 트레이너는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헬스부문 중 1위를 달리는 킬러앱(Killer App)이다.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운동하면 현재 위치와 거리, 속도, 칼로리소모량 등을 정확히 계산해주며, GPS, 나침반, 가속도센서 등 다양한 센서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이런 앱은, 제작과정에서 적어도 서너 개의 특허가 파생된다. 또한 후속 모델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기능까지 추가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운동기록이나 감량정도를 주위 동료나 사이버상 불특정 다수와 비교해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킹의 결합 그 자체만으로도 누

구나 탐낼만한 특허가 여러 건 나올 수 있다.

카디오 트레이너는 한국인 벤처 사업가인 정세주 씨와 구글(Google) 출신의 천재적인 프로그래머 알템 페타코프(Artem Petakov)와의 만남에 의해 탄생되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잘 살렸을 뿐 아니라, 제작부터 기획, 펀딩 및 장기적인 사업계획까지 잘 어우러진 성공작이다.

그런데 이 앱과 관련된 특허가 검색되지 않는다. DB검색도 안될뿐더러, 어떤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특허해기는 단 한 줄도 없다. (내가 찾지 못한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카디오 트레이너보다 더 낮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앱(복제한 것이 아니고 별개로 코딩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다면, 이 회사는 그것을 어떻게 방어하려는 건가?

#### ■ Apple Inc.

반면, 애플은 이미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모두 권리화 해두고 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apple and mobile and sensor...) 600건이 검색되어 나온다.



이 중 두 가지만 살펴보자.

2011. 4 |

- Music Synchronization Arrangement (USPA 20090139389)  
운동을 하고 있는 사용자의 기분이나 동작에 따라 재생되고 있는 음악의 재생속도가 빠르게 또는 느리게 재생되도록 하거나, 그 템포에 맞는 적절한 곡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하는 기술.

대표 클레임

A method for selecting a song based on an exercise regime, the method: comprising: determining a desired tempo based on an exercise regime that comprises four or more tempos; comparing the desired tempo to a plurality of tempo tags, wherein each tempo tag represents a tempo value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song; and selecting a song associated with a tempo tag that is similar to the desired tem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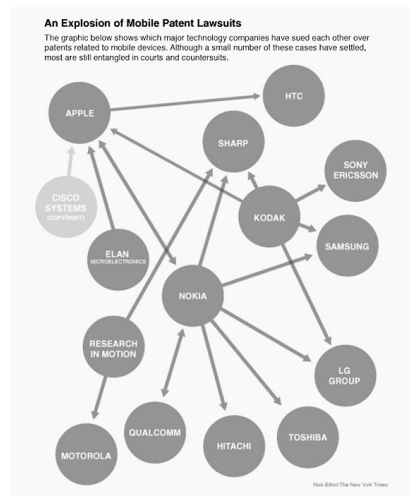
- Speakerphone Control for Mobile Device (USPA 20090209293)  
스피커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핸드프리 모드라 하더라도, 스피커폰을 activate하거나 deactivate 하기 위해 사용자는 장치를 물리적으로 접촉해야 하므로 무척 번거롭다. 그래서 사용자의 동작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스피커폰 모드를 activate하거나 deactivate 해줄 수 있는 기술.

대표 클레임

A method comprising: detecting a current state of a mobile

device; determining a control action associated with the current state; and automatically controlling a speaker-phone system associated with the mobile device based on the control action. The method, wherein detecting the current state includes receiving at least one sensor input related to acceleration, proximity, orientation, rotation, angle, connection to one or more hardware devices, gripping, time, distance, touch for user input, or volume levels.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세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 문명 속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더욱 강력한 특허를 많이 확보한 자가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미 세계는 스마트폰을 둘러싼 특허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록 그 시작은 늦었지만, 한국인 특유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법

# 명

**희석 [상표]** • 상표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일반적으로 타인이 동일, 유사하지 않는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당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의 식별력을 흐리게 하거나 상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비록 그 상표 사용행위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없더라도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는 것임. 이러한 경우를 상표권 희석이라고 함. 상표권의 희석의의와 적용방법, 적용사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총칭해서 희석이론(dilution theory)이라고 부르고 있음. 희석이론의 논의는 Frank Schechter의 논문(1927)이 시초이며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소위 반희석법(anti-dilution statute)이 미국의 각 주에서 입법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연방상표법에 도입되기에 이르고 있음.

**흡결/무효사유 있는 특허 [특허]** • 명세서 및 도면에 결함이 있거나 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보다 넓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시불능 또는 무효의 사유가 있는 특허를 말함. 흡결 또는 무효사유 있는 특허란 방식상의 흡결로서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불비, 기간의 불준수, 증명서 미첨부, 수수료 미납 등의 절차상의 흡결과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허용된 경우,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이 흡결된 발명에 특허권 등이 설정된 경우, 무권리자에 권리가 허용된 경우, 후출원인에게 권리가 허용된 경우, 조약에 위배되어 권리가 허용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특허법 제133조 제1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상표]** • 상표법상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요건을 결여하여 등록될 수 없음.(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

**휴면특허 [특허]** • 개시되어 있는 발명이 영업상 사업전망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권자가 그 특허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특허.

**후출원자 [지재권일반]** • 선발명을 결정하기 위한 특허 저촉절차에서 특허출원 순서에서 두 번째 당사자.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 산

# 식

## 특허소송 관할집중



박종훈

특허청 화학소재심사과 사무관  
행정고등고시 기술직 53회 합격

### 특허소송 관할집중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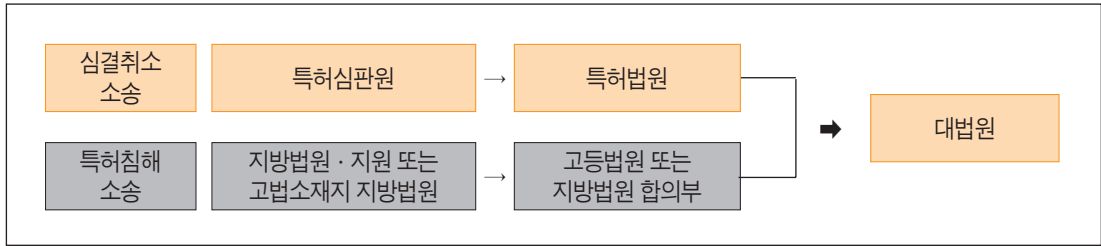
특허가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이슈로 부상하면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기업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1,000여 개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23%가 특허분쟁을 겪었으며, 이 중 분쟁에 이기고도 피해를 봤다는 기업이 33%에 달하는 등 특허분쟁은 승·패에 관계없이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LED 업체인 S반도체는 일본 기업과의 분쟁으로 3년간 5,000만 달러의 법률 비용을 지출하였고, S전자는 미국 기업과의 5년간의 소송 끝에 5년간 7억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내 반도체 업체인 P사의 경우 경쟁사와의 특허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53개월이 소요되는 등 특허소송은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기업 1,0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 최근 3년간 분쟁을 겪은 기업 22.6%, 이 중 손해를 본 기업은 58.9%  
(분쟁에 이기고 손해 본 기업 33.2%, 분쟁에 지고 손해 본 기업 25.7%)
  - \* 대한상공회의소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실태와 대응」 < '09.11

이러한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D 역량을 강화해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의 특성상 분쟁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정확한 분쟁 해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소송은 특허의 유·무효 및 권리범위 확정을 다루는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특허침해소송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또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은 지방법원·고등법원 등 일반법원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재판의 일관성·신속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 심결취소소송 : 특허청의 무효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 특허침해소송 : 특허권의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현행 특허소송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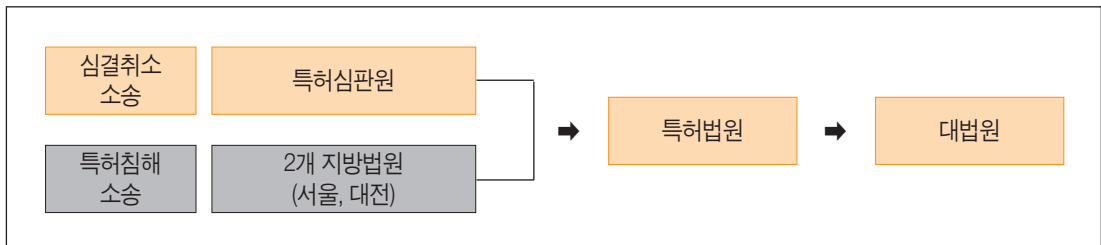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특허권의 유효·무효를 판단하는 심결취소소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심결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느라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이 별개의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양 소송 간 판결이 모순되는 등 이원화된 소송 구조로 인해 기업 등 소송의뢰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분쟁의 조기해결 및 판결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쟁의 조기해결과 판결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8년 3월 1일 특허법원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특허법원은 특허소송 전부를 관할하려던 본래 설립취지와는 달리 소송 중 일부인 심결취소소송만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2010년 현재 14명의 특허전문판사 및 17명의 기술심리관이 특허사건의 심결취소소송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특허침해 소송의 1심은 전국의 18개 지방법원과 38개의 지원에서 처리되고, 2심은 특허법원이 아닌 전국의 모든 고등법원에서 처리되고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침해소송 1심을 서울·대전 2개 법원으로 집중하고, 특허 침해소송 2심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여 판결의 신속성·일관성을 높이지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소송 관할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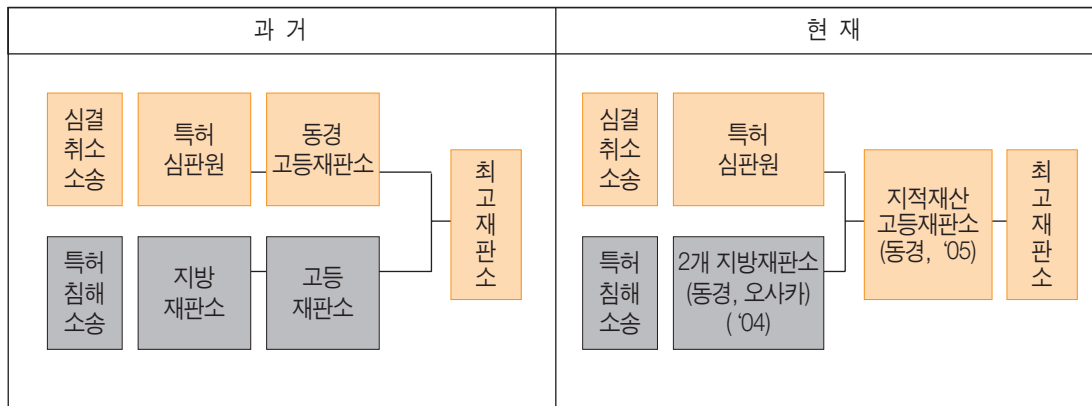
### 특허소송 관할집중 해외사례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자산을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특허소송 관할집중은 지식재산강국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제로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

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을 집중하여 지식재산관련 소송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특허소송 관할집중이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사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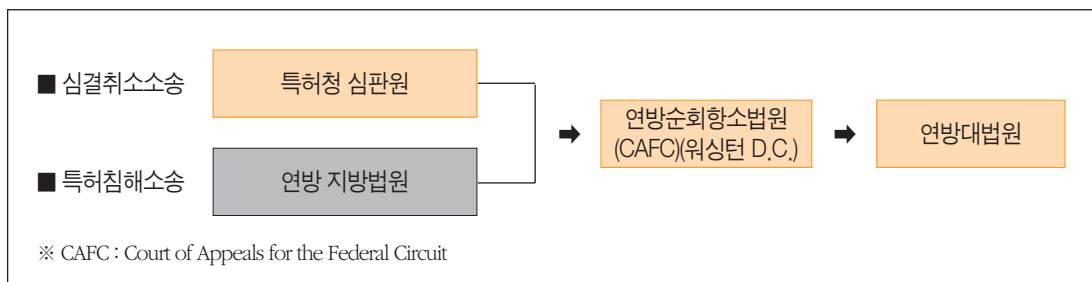
일본은 이미 2004년에 특허침해소송 1심을 동경과 오사카의 2개 지방법원에서만 처리하도록 하여 특허침해소송 1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나아가 2005년에는 항소심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동경)로 집중하여 특허소송 관할집중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특허소송 체계〉



미국은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통해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하나의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과거 미국에서는 특허소송에서 관할이 경합하는 경우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정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이 행해져 왔다. 위와 같은 폐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인식하에 1982년 의회에서 연방법원개선법(The Federal Courts Improvement Act, 28 U.S.C.)이 통과되었고, 이 법에 따라 종래 관할 지역에 따라 12개로 구성되어 있던 연방항소법원에 13번째 법원인 CAFC가 새로이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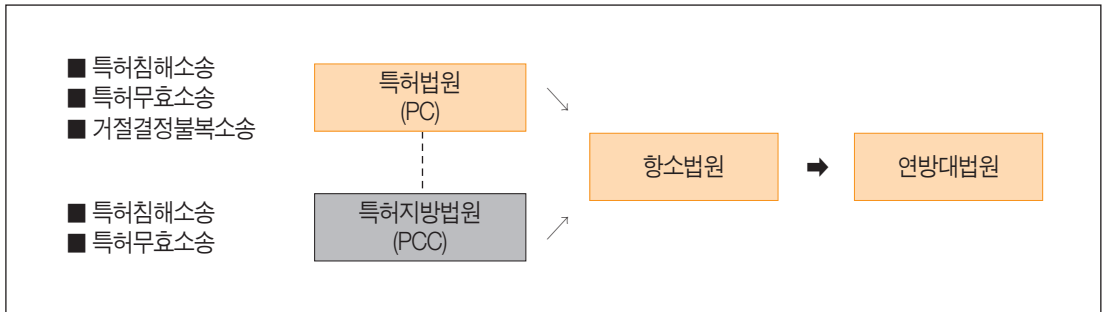
〈미국의 특허소송 체계〉



\* 상표 침해소송은 연방지방법원(1심) → 지역별 연방고등법원(2심) → 연방대법원 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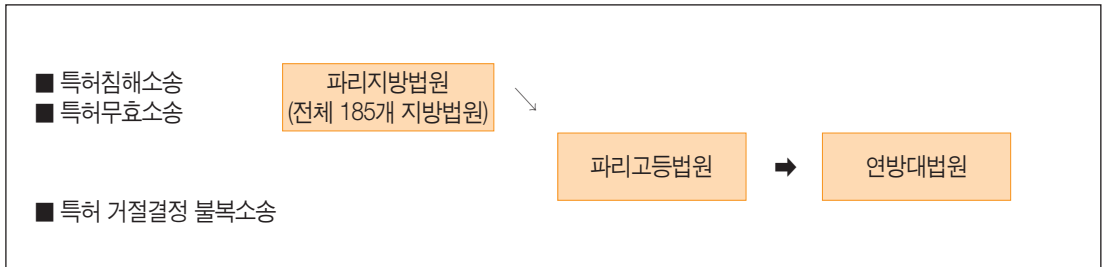
영국은 1977년부터 민사 1심법원(High Court)에 특허법원(Patent Court)을 설치하여 침해소송 및 심결취소소송을 관할 집중하고 있다. 또한 1990년에 침해소송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기업의 신속한 특허권 행사를 위해 런던에 특허지방법원 (Patent County Court)을 추가 설치하였다.

〈영국의 특허소송 체계〉



프랑스는 2009년에 특허침해소송을 파리지법 및 파리고법으로 집중하였고,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소송도 파리고법으로 관할집중하였다.

〈프랑스의 특허소송 체계〉



\* 상표·디자인의 거절불복소송 및 침해소송은 9개 지법 및 9개 고법이 담당

위 자료에서 보듯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을 통해 판결의 신속·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특허소송은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법원에서 판결하고 있고, 더구나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1심은 전국의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2심은 전국의 모든 고등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기술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판결의 신속·전문화를 위해 특허소송 관할집중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1. 4 |

# 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안의 고찰

## (Consideration of Patent Reform Act of 2011)



유철현 변호사  
현) 특허법인 가산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제44기 변호사 시험 합격

2011년 3월 2번째 주에, 미국 상원은 압도적인 표 차이(찬성: 95, 반대: 5)로 중대한 특허제도 변화를 의미하는 미국 특허법 개정안(America Invents Act; AIA)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상원 레하이(Patrick Leahy) 의원이 발의한 금번 미국 특허제도 개정안은 1952년 개정된 특허법 이후 가장 큰 특허제도의 변화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982년에 개정된 Federal Courts Improvement Act와 1984년에 개정된 Hatch-Waxman Act 법안도 특허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나, 특허법에 중심이 되는 신규성과 비자명성(novelty and nonobviousness)의 내용과 관련된 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금번 미국 특허제도 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각 주제별로 내용을 검토한다.

### 주요 개정안 내용

#### 선출원주의(First-to-File)

2006년 9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 회의

에서, 지재권 선진 41개국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발명주의를 고수하던 미국이 선출원주의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실제 특허법 통일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결국 SPLT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번 미국 특허법 개정에서 선발명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선출원주의를 도입하게 되었다.

선출원주의는 둘 이상의 출원이 경합한 경우 어떤 출원인이 먼저 발명했는지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출원인(最先出願者)의 특허출원을 등록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먼저 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출원자보다 늦게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선발명주의는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원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출원 순위에 관계없이 최선발명자(最先發明者), 곧 진정한 발명자에게 특허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는 서로 장단점이 명확하며, 선출원주의는 절차의 명확성 및 안정성을 우선순위로 두며, 선발명주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맞게 진정한 발명자를 보고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다만, 현재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선발명주의는 언제든지 자신이 최선발명자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서 발명을 출원하기보다는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발명의 조기공개 및 이로 인한 국가의 산업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서로 최선발명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를 입증하고 판단하는 데 곤란한 경우가 많다.

결국 금번 개정안을 통해 미국특허법 개정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선출원주의를 도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 내 복수의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 경쟁(patent race)을 하는 경우, 발명에 대한 특허는 선발명(first-to-invent)한 측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허출원을 선출원(first-to-file)한 측에게 부여된다. 또한, 이와 같은 선발명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미국 출원인에게 보다 많은 가특허출원의 진행을 유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35 U.S.C. §102 및 §103 규정을 살펴본다.

## 신규성 및 비자명성의 기준

금번 미국 개정안 하에서 특허등록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신규성과 비자명성에 관한 미국 특허법 35 U.S.C. Section 102 및 103 규정이 크게 변화되었다. 금번 개정된 35 U.S.C. Section 102(a) 규정은 신규성(novelty)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발명완성일(invention-date)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특허 출원인의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효출원일을 기준으로 종래의 기술(prior art)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로 인해 잠재적인 인용문헌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특허권 획득이 기존에 비해 어려워지게 된다. 인용문헌의 개시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변경된 것뿐만 아니라, 인용문헌의 범위를 규정하는 새로운 포괄적인 문구가 추가되었다. 즉, 새로 개정된 102조 규정에는 인용문헌 정의 중 “공중이 이용 가능한 모든 형태(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라는 포괄적인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 이 “공중이 이용 가능한 모든 형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법원이 판례를 통해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Section 102(a)(1) 규정에서는 인용문헌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유효출원일 보다 전에 특허되었거나 간행물에 기재된 것, 또는 공용된 것, 판매된 것, 또는 공중이 이용 가능한 모든 형태(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n sale, or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로 정의한다.

또한, Section 102(a)(2)에는 인용문헌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장하고 있으며, 현재 특허법의 Section 102(e)의 규정에 해당한다.

“section 151에 의해 등록된 특허에 기재되거나, 또는 section 122(b)에 의해 특허공개 또는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는 특허출원에 기재된 것으로, 상기 등록된 특허 또는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타인으로 기재되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유효출원일 보다 먼저 유효하게 출원된 것(the claimed invention was described in a patent issued under section 151, or in an application for patent

published or deemed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in which the patent or application, as the case may be, names another inventor and was effectively filed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즉,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제3자 출원이 공개되거나 등록되면 이들 출원의 유효출원일에 의해 인용문헌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유효출원일은 우선권 주장이 수반된 청구범위를 포함하는 개념(section 102(d)(2))이기 때문에, 미국출원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유효출원일의 범위가 보다 확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국내 특허법의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확대된 선원의 지위 규정과 대응될 수 있다. 따라서,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더라도 출원인의 출원보다 유효출원일이 앞서고 출원인의 출원 이후에 공개 또는 등록된 특허도 출원인의 출원을 심사하는데 인용문헌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비자명성에 관한 35 U.S.C. §103 규정도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을 기준으로 비자명성을 판단하고 있다. 즉, section 102의 규정에 따라 개시된 바 없더라도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가 유효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선행기술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 35 U.S.C. §103

A patent for a claimed invention may not be obtained, notwithstanding that the claimed invention is not identically disclosed as set forth in section 102, i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or art are such that the claimed invention as a whole would have been obviou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to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claimed invention pertains.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문헌 사이에 차이점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전체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유효출원일 전에 해당 발명이 속한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에게

자명할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중 section 102 조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일하게 개시되지 않은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비자명성을 규정하는 본 조항에서 변경된 점은 단지 현재의 규정에서 “등록을 받기 위한 특허의 목적대상(subject matter sought to be patented)”을 “청구범위(claims)”로 수정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전체(the claimed invention as a whole)”라는 문구는 전체 청구범위를 전체로서 심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각각을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그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비자명성에 대한 새로운 법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명이 완성된 시점(at the time the invention was made)”으로 규정되지 않고 특허청구범위의 “유효 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을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법원은 이미 법 규정의 문구와 달리, 비자명성을 해석할 때 후발명을 102(b) 규정의 인용문헌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규성 및 비자명성에 대한 section 102 및 103의 규정은 선출원주의에 따라 모두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을 기준으로 특허성을 판단하고 있다.

### 유예기간의 축소(Narrow Grace Period)

개정안의 Section 102(b) 규정은 102(a) 규정의 예외 조항이며, Section 102(b)(1)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유효출원일보다 1년 이내의 기간에 공개된 것 중, (A)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 또는 상기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시된 발명의 대상으로부터 획득한 제3자에 의해 개시된 경우, (B) 상기 공지되기 전에 개시된 발명의 대상이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 또는 상기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시된 발명의 대상으로부터 획득한 제3자에 의해 공연히 개시된 경우에는 종래의 기술에 포함되지 않는다. (A

disclosure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be prior art to the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1) if (A) the disclosure was made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r by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had, before such disclosure,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Section 102(b)(1)의 규정은 유효출원일보다 앞서서 공개된 경우를 규정하기 때문에 102(a)(1)과 대응되며, Section 102(b)(2)의 규정은 102(b)(1)의 규정과 동일하되, 유효출원일 이전에 출원된 발명 또는 유효출원일 이전에 출원되기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개시된 발명에 대해 규정하기 때문에 102(a)(2)와 대응될 수 있다.

개정안의 Section 102(b) 규정에 대응되는 현행 미국특허법은 “미국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상 전에, 그 발명이 국내외에서 특허 또는 간행물에 기재되었거나, 미국에서 공용 또는 판매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및 적용조건이 넓은 반면, 개정안의 Section 102(b) 규정은 유예기간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규정된 출원 전 1년의 유예기간을 축소시키며, 유예기간은 오직 해당출원의 1) 발명자에 의한 공개(disclosure) 2) 발명자로부터 유래된 공개(disclosure) 또는 3) 발명자가 이미 대중에게 공지한 후의 공개(disclosure) 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예기간 제한은 형식적인 발명 공개 공보의 부활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축소된 유예기간은 여전히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능한 범위 예를 들어 국내 특허법 30조에 규정된 신규성 의제 기간인 6개월 보다 넓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Section 102(b) 규정의 기술적인 문제는 핵심적인 문구인 공개(disclosure)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있다. 유예기간 조항은 출원일에 따른 인용문헌 조항의 예외

로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판매”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타입의 인용문헌에 본 예외조항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 파생절차(Derivation proceedings)

선출원주의를 근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 개정안에는 현재의 2개의 특허출원 간의 선발명된 출원을 결정하기 위한 현재의 저촉심사(interferences)에 대한 Section 102(g) 규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인 파생절차(derivation proceeding)에 관한 조항(section 135) 및 파생소송(Civil action in case of derivation proceeding)에 관한 조항(section 146)이 포함되었다. 파생절차에서는 미국특허청에 선출원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후출원으로부터 파생된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특허심판부(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서 파생절차를 진행 및 심리하게 되며, 동일한 발명을 청구하는 2개의 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파생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즉, 개정안은 선출원에 청구된 발명이 후출원으로부터 파생된(derived) 경우, 법원에서의 파생소송 또는 특허청에서의 파생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특허청 단계에서의 파생절차의 중요한 점은 section 135의 규정에서 권한 없이(without authorization) 파생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권한 있음을 증명하거나 파생절차 중간에 양 측이 협의(section 135(e) - settlement)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중재(section 135(f) - arbitration)를 통한 사건 해결도 가능하다.

특허청 및 법원에 남은 파생 조항에 대한 하나의 문제점은 핵심 문구인 “파생된(derived)”의 의미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생된”에 광의를 부여할 경우, 파생절차는 발명자에게 저작권법 규정의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s)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 선사용자의 권리 폐지

본 개정안 선사용자에 대한 권리에 관한 어떠한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록 현재 특허법이 제한된 선사용권을 포함하고 있지만, 침해소송을 당한 선사용자는 Section

102(g) 조항에 따라 선발명을 주장함으로써 해당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본 선택사항은 선출원주의 하에서 개정안에는 삭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사용자는 잠재적으로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 제3자 이의신청 (Third Party Administrative Challenges)

개정안은 제3자가 타인의 특허출원이 심사되는 과정 동안 미국특허청에 특허문헌 또는 간행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국내법의 정보제공 제도에 해당한다. 개정안 하에서는 또한 특허등록 후 9개월 이내에 모든 특허성 요건에 대한 “등록 후 재심리 절차(post-grant review proceedings)”를 위한 청원(petitions)이 가능하다.

9개월의 “등록 후 재심리 절차(post-grant review proceedings)”가 완료된 후, 법안은 “당사자계 재심리(inter partes review)”를 위한 청원(petitions)도 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계 재심리(inter partes review)”는 “등록 후 재심리 절차(post-grant review proceedings)”와 달리, 제3자는 종래의 기술에 대한 특허문헌 또는 인쇄된 간행물에 기초하여 오직 신규성 흠결 또는 비자명성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1) 관할법원에 등록특허의 이의제기에 대한 소(lawsuit)가 이미 제기된 경우, 또는 (2)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 침해 고소(patent infringement complaint)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제3자의 “등록 후 재심리” 또는 “당사자계 재심리”에 대한 청원(petition)이 금지된다. 또한, 청원에서 패배한 청원인은 금반언에 의해, 추후 관할 법원 소송 또는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절차에서, 등록 후 재심리 과정에서 실제로 제기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 있었던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어떠한 사유도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 세금 특허(Tax Strategies Patent)의 금지

개정안은, 납세의무(tax liability)를 부당하게 감소하거나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에 대한 특허출원은, 해당 특허에 대한 발명 시점 또는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방

법이 알려졌는지 알려지지 않았는지와는 무관하게 종래의 기술로부터 구별되는데 불충분하다고 간주하고 있다.(any strategy for reducing, avoiding, or deferring tax liability, whether known or unknown at the time of the invention or application for patent, shall be deemed insufficient to differentiate a claimed invention from the prior art.)

세금특허는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시스템 또는 방법을 기재한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특허이며, 이미 USPTO를 통해 공개된 특허가 100여 건 이상 존재한다. 이미 세금특허는 이의 유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된 바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세금특허의 금지는 기존의 2007년에 발의된 특허법 개정안(Patent Reform Act of 2007) 및 세금 악용 금지법(Stop Tax Haven Abuse Act)에서 다수 제안된 바 있으나 통과된 적은 없기 때문에 금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특허에 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금번 개정법을 통해 과세 특허를 포함하는 어떠한 청구항도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미국특허청은 종래의 기술을 고려하여 신규성이 흠결되었거나 또는 종래의 기술로부터 자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한사항은 본 개정안이 특허법으로 제정될 경우, 계류 중인 모든 특허출원 및 발행되는 모든 특허출원에 적용된다.

### 소송의 이송(transfer venue)

개정안은 법원이 사건을 이송하기 위해서는, 이송지가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장소보다 편리한(convenient) 것이 명백한 경우를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최적의 실시 예 요건(Best Mode Requirement)

현행 35 U.S.C. § 112에서는 출원인은 해당 발명을 실시하는데 최적의 실시 예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요건은 실질적으로 특허출원 절차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등록 후에는 무효사유나 효력제한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최적의 실시 예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 이를 청구범위를 무효화하거나 등록된 청구항의 강제력을 제한하는 사유를 규정하는 35 U.S.C. section 282 문구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최적의 실시 예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효 또는 효력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 발명자 서약 또는 선언서 (Inventor's Oath or Declaration)

개정안은 발명자가 근면한 노력 후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행방불명 되는 경우 발명자의 서약 또는 선언서를 대신하여 대리진술서(substitute statement)를 제출하는 현재의 절차를 간명화 한다.

### 발명자 대신 출원(Filing by Other than Inventor)

개정안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 발명자를 대신하여 예를 들어 양수인과 같은 특정인이 특허출원에 대한 소유지분(proprietary interest)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특정인이 해당 발명의 완전한 양수인인 경우, 특허가 등록되면 발명자가 아닌 상기 양수인에게 바로 특허가 허여된다.

### 심사비용 책정 권한(Fee Setting Authority)

개정안은 미국특허청이 징수하는 관납료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미국특허청의 소요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 기타

그 외에도, 미국 경제개발에 중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정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의 도입, 최근 BM특허에 관한 *Bilski v. Kappos*에 대한 판례의 명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결론

지면 관계상 본 개정안의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허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본 개정안 중 35 U.S.C. §102 및 §103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판단되어 §102 및 §103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개정안에서는 특허성 판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2 및 §103가 선발명주의에 맞춰 유효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성을 심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대한민국 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으로 미국에서 출원할 경우, 미국 심사관에 의해 제시된 인용문헌의 공개일자가 우선일과 인접한 경우, 발명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인용문헌을 배제시키는 등의 선발명주의에 기초한 기존의 대응방안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등록가능성은 현행 특허법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허성 및 파생절차를 모두 유효출원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 측면에서 발명의 선후관계를 용이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발명 완성 후 특허출원을 바로 진행해야 하므로 발명의 공개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본 개정안은 상원을 통과한 상태이며, 아직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개정안대로 특허법이 개정될지 아직은 확실할 수 없다. 다만, 본 개정안이 그대로 하원을 통과할 경우 개정 특허법이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비단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출원을 진행하는 나머지 전 세계에도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컨대, 현재 본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할 때 압도적인 지지(95:5)를 받은 것을 비추어 볼 때, 큰 변화 없이 하원도 통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발명주의를 고수하던 미국의 입장변화는, 전세계 특허출원 절차의 통일을 위한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세계 특허제도의 실체법적인 통일도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1. 4 |

# 건설기술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서 특허활용실적 소개



김규연

현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전문위원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학사  
제45회 변리사 시험합격  
전 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재직

건설 기술 분야의 사업능력평가(PQ)가 입찰에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특허 활용실적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고시에 따라 이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우리회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을 승인하는 기관으로서, 본 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특허활용실적 PQ 제도의 입법취지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종래 활용실적 관리시스템이 없어 각 발주청이 개별적으로 활용실적을 제출받아 확인해야 하는 불편 발생
- 건설기술관련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권리 획득이 PQ 점수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권리의 상당 부분이 미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점
- 건설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이 활용도가 높은 출원으로 대체됨에 따라 건설기술 분야의 실질적인 기술 개발 및 특허출원의 활성화 기대

상기 취지에 따라 2008년 1월 국토해양부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93호)”이 개정되었고 2008년 3월부터 우리회는 이에 대한 실적을 신고 받고 있다.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 신고에 대한 관련 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37호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

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09.12.31)의 부칙1항 부표 II-9다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 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예시)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36호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2009.12.31)의 부칙1항 부표 II-8다

- \*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에 적용(설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35호 '갑

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09.12.31)의 별표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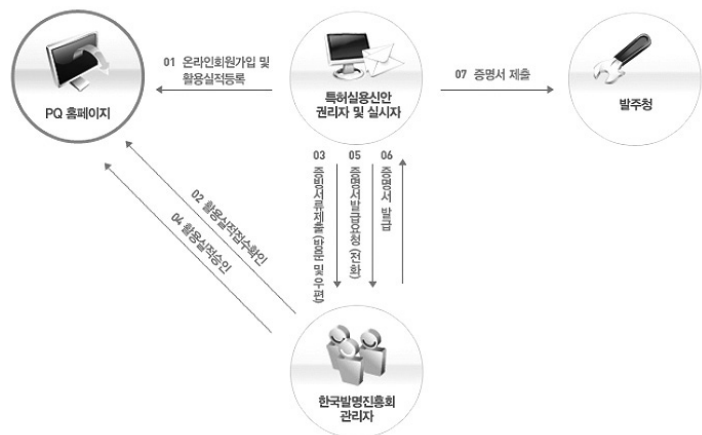
- \* 2012.1.1부터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적용을 건설기술과 동일하게 활용실적으로 전환하되 최대 1점까지 인정하며, 실용신안은 폐지
  - 상기 감리에 대한 특허 활용실적 인정 여부는 올 6월경(예정)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될 고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각 부문에 대한 세부사항 정리

해당법령	건설기술관리법			
	항목	설계(2009.12.31)	감리(2009.12.31)	CM(2009.12.31)
활용 실적	배점	3점	3점(예정)	1점
	최초출원인	• 회사(대표자 포함)	• 회사(대표자 포함)	• 회사(대표자 포함)
	인정범위	• 등록 + 보호기간내 공공공사 설계적용 + 보호기간내 공사 반영(기성완료부분)	• 등록 + 보호기간내 활용실적 (2012.01.01부터 실적 적용 예정, 실용신안은 폐지)	• 등록 + 보호기간내 공공공사 CM(설계단계가 포함된 CM) 적용 + 보호기간내 공사 반영(기성완료부분)
	실적 가중치	• 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따라 적용 - 실적건수 : 1건 (0.6)~5건이상(1.0) -실적금액 : 12억 (0.6)~20억이상 (1.0)	• 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따라 적용 - 실적건수 : 1건 (0.6)~50건이상(1.0) - 실적금액 : 0.5억 (0.6)~70억이상(1.0) (2012.01.01부터 실적 적용 예정)	•차등적용 규정만 있고 상세내용 없음 •조달청규정은 설계와 동일 •발주청 자체규정 보유
	실적관리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상동 예정	한국발명진흥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신고 및 관리 절차

상기 규정에 맞게 특허를 활용한 권리자는 하기 절차에 맞추어 우리 회에서 실적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① PAPAMS사이트(papams.kipa.org) 접속 후 온라인회원가입 및 활용실적등록
  - 업체 일반사항 등록
  - 특허·실용신안 자료 및 활용실적 자료 등록
- ② 활용실적접수확인
- ③ 증빙서류제출
  - 별지서식 및 기타 증빙서류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 ④ 활용실적승인
  - 승인 후 기본회비 및 통상회비 납부
- ⑤ 증명서발급요청(전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 ⑥ 증명서발급
  - 발급수수료 납부
- ⑦ 발주청에 증명서제출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접수현황

1) 2009년도 실적 접수결과 현황

2009년 접수결과 : 22개 업체

- 실적보유 권리 86건(특허 84건, 실용신안 2건)
- 적용공사 85건
- ※ 복수의 특허가 1개 공사에 적용된 경우 또는 1개 특허가 복수의 공사에 적용된 경우에는 특허건별 실적건수로는 184건임
- 접수실적금액 약 344억

IPC 분류별

섹션	A (생활필수품)	B (처리조작, 운수)	C (화학, 야금)	D (섬유, 지류)	E (고정구조물)	F (기계공학)	G (물리학)	H (전기)	합계
특허수	1	4	10	-	12	2	56	1	86
비율 (%)	1.2	4.7	11.6	-	14	2.3	65.1	1.2	100

G섹션에 해당하는 특허수가 56건으로 65.1%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E섹션에 해당하는 특허수도 12건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G섹션에 해당하는 특허수가 높은 이유는 (항공)측량, 지도제작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실적을 제출한 결과이다.

2) 2010년도 실적 접수결과 현황

2010년 접수결과 : 22개 업체

- 실적보유 권리 76건(특허 74건, 실용신안 2건)
- 적용공사 85건
- ※ 복수의 특허가 1개 공사에 적용된 경우 또는 1개 특허가 복수의 공사에 적용된 경우에는 특허건별 실적건수로는 162건임
- 접수실적금액 약 95억 원

IPC 분류별

섹션	A (생활필수품)	B (처리조작, 운수)	C (화학, 야금)	D (섬유, 지류)	E (고정구조물)	F (기계공학)	G (물리학)	H (전기)	합계
특허수	1	4	10	-	12	2	56	1	86
비율 (%)	1.2	4.7	11.6	-	14	2.3	65.1	1.2	100

G섹션에 해당하는 특허수가 56건으로 65.1%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E섹션에 해당하는 특허수도 12건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G섹션에 해당하는 특허수가 높은 이유는 (항공)측량, 지도제작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실적을 제출한 결과이다.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에 대한 현장 실사

연간 수 건 임의로 선정, 현장실사를 통하여 특허 기술의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사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2010년 6월 실사)

## 1) 특허 대상 기술

활용특허	등록 번호	10-0799359
	특허 명칭	저층수 방출이 가능한 공압식 가동보
	내용 요약	본 발명은 저층수 방출이 가능한 공압식 가동보에 관한 것으로, 저층수를 공압식 가동보로부터 먼 곳에 방출하여 공압식 가동보의 저부에 퇴적사가 쌓이지 않도록 하며, 시각적인 거부감을 없애려는데 목적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저층수 방출이 가능한 공압식 가동보는, 내부에 공급되는 유체에 의해 팽창 또는 수축하면서 기립하는 고무튜브(120)와, 상기 고무튜브의 기립시 함께 기립하며 통공(131)이 형성된 방출유도판(130)과, 상기 방출유도판에 형성되어 상류측 저층수의 방출을유도하는 저층수 방출관(140)을 포함하며, 상기 저층수 방출관은, 하단부에 상기 유입구가 형성되며 상단부가 상기 방출유도판의 통공에 연통되도록 상기 방출유도판의 상류측면에 형성되는 제1방출부(141), 상기 방출유도판의 하류측면에서 하단부가 상기 방출유도판의 통공과 연통되도록 형성되고 상단부에 상기 방출구가 형성되도록 돌출 형성되어 상기 제1방출부를 통해 물오름된 저층수가 하류로 방출되도록 하는 제2방출부(142), 상기 제2방출부의 상기 방출구 저부에 형성되어 상기 제2방출부를 따라 흐르는 저층수가 상기 방출구의 직하방으로부터 먼 곳으로 방출 안내하는 방출유도부(143)로 이루어진다. (필호 속의 숫자는 하기 도면부호임)
대표 도면		

## 2) 공사현장 전경



## 3) 특허활용현황

	하단부에 상기 유입구가 형성되며 상단부가 상기 방출유도판의 상단부에서 일정 거리 하측으로 이격된 곳에 형성된 통공에 연통되도록 상기 방출유도판의 상류측면에 돌출형성되서 상기 하천의 저층의 물오름을 안내하는 제1 방출부
	상기 기초부 상에 상기 하천의 폭 방향을 따라 설치되며 내부에 공급되는 공기에 의해 팽창 또는 수축하여 기립 또는 도복하면서 상기 하천을 가로막서 담수하거나 방출시키는 고무튜브
	상기 방출 유도판의 하류 측에 배치되면서 상하 양단부가 각각 상기 방출유도판과 기초부에 설치되어 상기 방출유도판의 뒤집힘을 방지하는 지지대

## 4) 현장실사 결과

해당 업체는 '기립 가능한 고무튜브'와 '물오름된 저층수 방류가 가능한 하류측의 방출부'를 포함한 가동보를 건립하고 있으며 상기 사실이 육안 확인 가능하여, 특허 제10-0799359호를 공사 현장에 실제 적용하고 활용한 것으로 인정된 바 있다.

## PQ 홈페이지 안내

본 홈페이지에서는 활용실적을 신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메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통상수수료에 대하여 미리 계산하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기 전 온라인으로 실적을 입력하고 이에 대한 출력물에 발주청의 확인을 받도록 한 Process 상 하기 홈페이지의 접속은 불가피하며 실적 신고 시, 해당 실적에 대한 정확한 입력이 요구된다.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http://kipa.org/papams/> 또는 <http://papams.kipa.org> 를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다.

또는 <http://www.kipa.org> 우리회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사업안내 > 지식재산가치극대화 > 기술평가사업 > 건설기술활용실적증명(PQ)를 클릭하여 Papams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본 실적을 처음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 담당자는 우측상단에 있는 Join을 클릭하여 먼저 회원가입 후에 이용하면 되고, 메뉴얼을 다운받아 읽어보면 홈페이지 활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PQ담당자의 의견

필자는 본 PQ에 대한 업무 책임을 2년째 맡고 있다. 다양한 업체들과 건설기술에 대한 활용실적 승인 가능 여부 및 정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현재는 건설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이 많이 늘었고, 배우는 게 많다.

다만, 활용실적 가부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Tip은 법문을 참조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35호 내지 제2009-1337호에 대한 고시 및 건설기술 관리법과 그 시행령 상의 법문에 입각하면 활용실적의 대상 가부에 대한 판단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흔하게 혼란스러워 하는 점으로는, '해당 특허가 건설기술에 대한 특허인지'에 대해서와 '발주청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전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정의)의 2호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실적의 인정 자체가 공공공사에 한정되는 특성상 발주청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2(발주청의 범위)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법문이 가장 확실한 판단의 근거로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특히 중소형 업체 있어서, 본 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문의하는 전화를 종종 받는다. 정당하게 활용된 특허에 대하여는 가점을 받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 특히 본 제도는 의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 조건이 까다로워 점수를 받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바란다. 건설기술에 대한 특허가 점수의 목적을 벗어나 실제 활용되고 이를 통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2011. 4

# Column

- 현장탐방
- 특허 Q&A
  - IP 칼럼
  - 발명 365
- 지식재산 경영전략
-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





공과대학으로 시작한 인하대학교

## 인하대학교 특허교육 현장을 가다

### 엄정한 변리사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유미특허법인, 특허법인 엔트리  
서울대, 공주대, 경상대, 강원대  
지식재산권 특강  
저서 : 특허법 에센스



### ‘강한특허’와 대학 특허교육의 중요성

강한특허란 무엇일까? ‘강한특허를 만들어야 한다’ ‘강한특허를 창출하는 전략은 이런 것이다’ ‘강한특허를 만들어야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등의 이야기와 기사들이 많지만 과연 ‘강한특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각종 논문과 기사들을 종합했을 때 ‘강한특허’는 결국 ‘돈이 되는 특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강한특허는 ①권리범위가 넓고 ②무효가능성이 낮으며 ③시장성 높은 분야의 기술을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를 의미한다. 강한특허는 특허기술을 라이선스 받고자 하는 기술수요자를 자연스럽게 불러모으며, 침해 및 분쟁 발생 시 침해를 신속히 금지시키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적 성장을 중요시하는 최근의 IP트렌드에 부합하는 IP 분야의 핫아이콘(Hot Ic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강한특허’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앞서 살핀 강한특허를 갖추기 위해서는 ①권리범위가 넓은 상위 카테고리의 기술(원천특허)을 창출해낼 수 있는 연구능력, ②특허가 등록된 이후 제기될 수도 있는 무효공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특허를 만들어내는 특허설계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창출된 기술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한 시장을 찾아낼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공과대학들은 우수한 연구선도자(교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①의 연구능력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기업들보다 뛰어나다. ③의 시장에 대한 통찰력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보다는 못하겠지만, 최근에는 공과대학 구성원들이 시장전문가들과 협업을 많이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증가 등으로 인하여 많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공과대학과 대학연구자들에게는 특허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미진한 실정이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대학들이 연구자급과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하고도 연구결과물을 돈이 되는 ‘강한특허’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연구자, 발명가들이 노력해 얻어낸 우수한 연구결과물들을 ‘강한특허’로 만들어 수익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강한특허’의 3요소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허교육이 시급히 필요하다. 공과대학은 훌륭한 연구능력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특허능력을 갖추어야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며, 현재 국내의 공과대학 중 가장 많은 특허강좌가 운영(학기당)되고 있고, 연간 약 1,000명의 특허교육 이수자를 배출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교육센터를 찾아가 보았다.

### 인하대학교의 특허교육 성공사례

현재 인하대학교의 모체로 1954년 설립되어 50여년의 역사를 거친 인하공과대학은 현재 9개 학부, 19개 전공에 230여 명의 교수님들과 8,000여 명의 학부생, 1,000여 명의 대학원생들이 창조적이고 능력있는 공학도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학교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부분적으로 특허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인하대학교는 2005년 인하공학교육혁신센터가 설립된 이후 혁신아젠다를 수립

하고 창의성,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점사업으로 진행하면서 2008년부터 특허교육을 전면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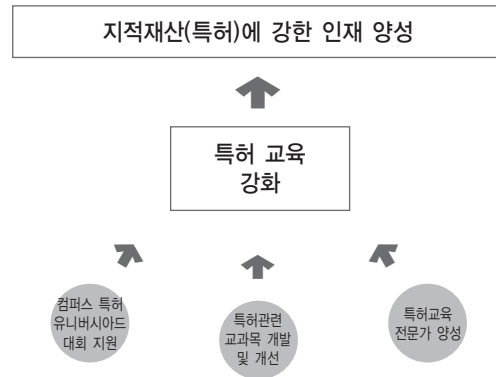


그림 1 - 인하대학교의 특허교육 전략

2008년도 1학기부터 시작된 인하공학교육혁신센터의 특허교육은 초기에 4개의 분반에서 362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의 강좌명을 가진 특허수업은 수강신청 개시후 몇 시간만에 마감되었을 정도로 학생들의 기대가 높았다. 이공계 학생들의 특허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이미 2000년 중반이후부터 증가하고 있었고, 이러한 교육수요자들의 요청에 알맞는 강좌개설은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을 수 밖에 없었다. 2008년 2학기에도 정원마감이 되었고, 한국발명진흥회의 콘텐츠 지원과 젊고 실력있는 실무강사(변리사)들의 강의에 관한 입소문으로 인하여 2009년 1학기에는 466명으로까지 수강인원이 증가하였다. 1분반당 평균 120명에 이르게된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강좌는 학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2010년에 2개 분반이 추가되어 총 6개의 분반이 운영되게 되었고, 2011년에는 다시 2개 분반이 추가(총 8개 분반)될 정도로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년도·학기	분반 수	학생 수	한국발명진흥회 지원 내역	학교 지원 내역
2008-1	4	362	1. 각 강사와 협의 하에 강의 커리큘럼 제공 2. 온라인 강좌 개설 3. 강사추천 4. 교재 제공 5. 기타 (지식재산 썸머스쿨, CPU, 대학청의발명경진대회 등)	1. 강사료 지불 2. 강의 장소 확보 3. 기타 각종 수업 지원
2008-2	4	362		
2009-1	4	466		
2009-2	4	389		
2010-1	6	469		
2010-2	6	501		
2011-1	8	573		

표 1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운영

또한, 3년간의 성공적인 특허교육을 통해 기본기를 닦은 이공계 학부생은 기본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넘어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요청하게 되었고, 인하공학교육혁신센터와 토목공학과와의 협의하에 ‘특허정보 검색과 명세서 작성’이라는 과목이 2011년 1학기에 개설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수상하는 것이 목표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특허를 설계하고 출원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강좌이며 실무적인 능력을 쌓고자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강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목 적	공학인증 전문교양에 특허심화과정을 개설하여 특허에 강한 공대생을 양성하고, 현장중심의 실용학풍을 구현하고자 함.
내용구성	특허정보조사(선행기술조사) 및 특허 분석 지식재산권과 특허제도의 이해 특허 명세서 작성
진행방식	실습위주의 강의, 학생들의 발표와 리뷰 포함 실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리사를 초빙하여 강의
단기목표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 수상
장기목표	특허 출원

표 2 “특허정보 검색과 명세서 작성” 교과목 신규 개설: 2011학년도 1학기

이러한 인하공학교육혁신센터의 특허교육 성공사례는 교육을 지원하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뿐만 아니라 다른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성공케이스로 꼽히고 있으며, 한국 공과대학이 나아가야 할 특허교육

의 모범이 되고 있다. 단순한 특허지식전달이 아닌 실질적인 연구결과물 보호방법의 교육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것을 시사하고 있다.

### 특허교육의 성과 -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입상과 특허출원의 급증

인하대학교의 특허교육은 이공계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재산에 관한 수준높은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특허맵작성, 특허전략수립 등과 같은 실무적인 내용까지 지향하고 있다. 단순히 법조문의 내용만을 익혀서는 특허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학생들이 수업과 별도로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특허청,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가지게 되는 지식재산상의 어려움을 실무해결형 과제로 출제하고, 대학생이 지도교수와 함께 해답을 제시하도록 하는 대회이다. 학생들은 전기·전자, 조선·기계·금속, 화학·생명 등 3대 산업분야에서 46개 기업이 출제한 문제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선행특허 조사·분석 등을 통해 특허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미래 핵심특허를 얻기 위한 전략수립 등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인하대학교 학생들은 2008년 제1회 대회부터 출전하였으며, 특히 2009년부터현재까지 ‘최다응모 대학상’을 매년 수상하였다. 2010년에는 선행기술조사부문에서 우수상(2팀, 100만 원/팀), 장려상(7팀, 50만 원/팀), 특허전략수립부문에서 장려상(5팀, 200만 원/팀)을 수상하였다. 또한 선행기술조사부문 381팀과 특허전략수립부문 10팀이 참가하여 최다 응모 대학상(1,000만 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렇듯 인하대학교 학생들은 선행기술 조사 부문과 특허전략 수립부문 전부문에 걸쳐 우수상과 장려상을 다수 수상하여 인하대학교 특허

교육의 탁월한 성과를 수상으로 입증하고 있다.

회차	년도	주관	분야	신청 및 수상	비고
1	2008	한국발명진흥회	선행기술 조사부문	177명 신청	-
			특허전략 수립부문	19팀 신청 1팀 수상(장려상)	
2	2009		선행기술 조사부문	415명 신청, 403명 제출 3명 수상(장려상)	최다응모 대학상 수상 (1,000만 원)
			특허전략 수립부문	20팀 신청, 7팀 제출	
3	2010		선행기술 조사부문	497명 신청, 381명 제출 9명 수상(우수2, 장려7)	최다응모 대학상 수상 (1,000만 원)
			특허전략 수립부문	19팀 신청, 7팀 제출 5팀 수상(장려5)	

표 3 - 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 수상자료



그림 2 - 왼쪽부터 함성환(기계3)군, 민일제(생명공학4)군, 김영수(산업공학3)군, 이태영(화학공학4)군, 이지혜(생명공학4)양이 특허전략수립부문의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인하대학교는 2001년 3건에서 2008년 294건으로 특허출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10위 안에 드는 숫자이며, 10년간 누적 특허출원이 약 1,000건에 이른다. 이는 KAIST,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에 이은 전국 6위의 특허출원 규모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전 성과도 상당하다. (자료 - 한국의 특허동향 2009, 특허청)

이처럼 인하대학교의 특허교육은 내실과 외양 양면에서 성과를 거

두고 있으며,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구성원 모두의 호응에 힘입어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지고 있다.

### 특허교육의 성공요건 - 교수들의 적극적인 특허교육 참여

매년 약 1,000여 명의 특허교육 이수자를 배출하고, 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에서 수많은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도 처음부터 특허교육이 활성화되었던 것은 아니다. 인하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진성희 박사는 인하대학교 특허교육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 '공과대학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라고 말한다.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수진들의 협의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인하대학교 특허교육이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교수진 차원에서 한국발명진흥회의 여러 가지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T3)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교수들의 특허지식 향상과 함께 공과대학 전반적인 특허중시풍토가 조성되었다.

	성명	전공	성명	전공
1	김유성	정보통신공학	9 신도형	토목공학
2	이철균	생명공학	10 김승현	섬유신소재공학
3	조우석	토목공학	11 한지영	공학교육혁신센터
4	이창호	산업공학	12 박노옥	지리정보공학
5	이천	전기공학	13 김정환	환경공학
6	이우기	산업공학	14 윤현식	생명공학
7	신수봉	토목공학	15 김은기	생명공학
8	한승우	건축공학		

표 4 - 15명이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인 T3교육을 이수하였다.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진의 특허중시적인 활동은 공과대학 학부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T3 심화과정인 '해외심화 T3교육' 과 '특허정보조사 심화과정' 은 각각 미국과 제주도에 실시되었는데, 이 과정에도 조우석, 신도형 교수(해외과정), 김유성, 이창호, 이우기, 이천 교수(특허정보조사 심화과정)이 참가하여 보다 심화된 내용의 특허교육을 이수하였다. 이러한 교수진들의 특허에 관한 높은 열정이 인하대학교 특허교육의 성공의 탄탄한 초석이 되었다.

### 마치며



그림 3 - 인하대학교 하이테크센터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결국 기술수출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일 수밖에 없다. 이미 상당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추월한 10억 인구의 중국과 100년이 넘는 기술개발로 아직도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의 틈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되는 우리의 '강한특허' 를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인하대학교는 이러한 사실을 다른 공과대학보다 앞서 깨달았으며, '강한특허' 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특허교육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잘 갖추어진 특허교육 시스템과 특허중시 연구문화를 창출해내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는 앞으로 10년 후의 인하대학교의 미래가 너무나 기대되게 하는 이유이다.

2011. 4 |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계좌이체 결제방법이란 무엇인가요?

- 특허수수료 및 제증명 수수료를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출원인이 법인이고 특허수수료를 계좌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용수료가 부과되며 결제 가능시간이 은행별 상이합니다. 결제 방법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수수료 관리 → 수수료 납부 → 특허수수료(제증명포함) 납부 → 온라인 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납부방법 선택(계좌이체)하고 인출할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등 계좌정보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결제됩니다.
  - ※ 납부수단에 따른 납부 가능 시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로 홈페이지 (<http://www.patent.go.kr>) → 수수료 관리 → 수수료 납부 → 온라인 납부 도움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원이 벤처기업과 일반인의 공동출원인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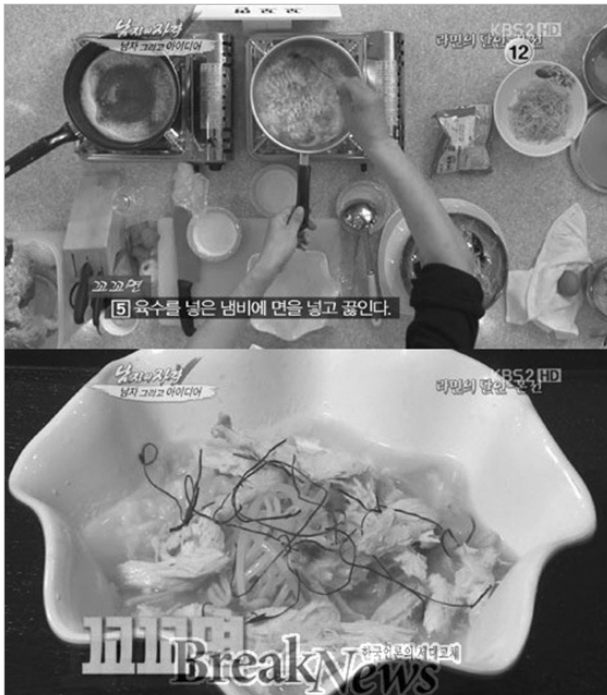
- 출원인이 2인 이상의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그 중 1출원인이 벤처기업일 경우에도 우선심사를 인정합니다. 또한 법인명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우선심사청구 건에 대해서는 대표자 개인명의로 아닌 법인명으로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심사를 인정하며 우선심사신청일 또는 우선심사결정일이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여야 합니다. 09. 11. 20 이후 우선심사 신청부터 최초 출원시 출원인은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나 출원 후 벤처기업으로 변경 또는 벤처기업을 추가하는 출원인변경을 한 경우에는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벤처기업이 최초 출원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출원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우선심사 여부 결정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경규의 꼬꼬면, 상표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전소정

현) 지심IP&COMPANY 파트너 변리사  
 현) 북경 MING&SURE 특허법률사무소  
 한국 IP DESK 대표  
 2008년 유미특허법인 상표팀 변리사  
 2005년 유니스특허법인 화학팀, 상표팀 변리사



이 경규의 ‘꼬꼬면’이 결국 ‘이경규의 꼬꼬면’이란 상품명으로 올 가을 정식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규는 지난 20일, 27일 방송된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에서 치뤄진 라면 경연대회에서 ‘꼬꼬면’을 선보였고,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비록 1등은 ‘샬러드라면’에 넘겨줘야 했지만 방송 직후 수많은 라면업체들로 러브콜을 받아 정식 상품화하기로 결정한 것. 하지만 방송 직후 한 일반인이 꼬꼬면에 대해 먼저 상표 등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꼬꼬면’이 첫 방송을 탄 다음날인 21일 특허청에 ‘꼬꼬면’에 대한 상품등록 출원서를 냈다. 상품화를 논의 중인 라면업체 관계자도 “‘꼬꼬면’ 상표가 다른 이에 의해 먼저 등록된 사실을 이경규 씨에게 문의하니 그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경규는 방송 직후 ‘꼬꼬면’이 누군가에 의해 상표등록이 된 점을 알고는 불같이 화를 냈다. 하지만 ‘꼬꼬면’이라는 말이 보기에 따라

선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대응은 없기로 했다. 이경규는 “정말 빠른 세상이다. 어쩔 수 없지 않나”라며 허탈해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꼬꼬면’이란 상품명에 빼앗긴 이경규는 ‘이경규의 꼬꼬면’이란 명칭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이경규와 라면 업체는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9월경 출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링크 \_ [http://n.breaknews.com/sub\\_read.html?uid=167344&section=sc4](http://n.breaknews.com/sub_read.html?uid=167344&section=sc4)      저작권자 breaknews

KBS 간판 오락프로그램인 ‘남자의 자격’에서 선보인 ‘라면의 달인’ 시리즈에서 유명세를 탄 이경규의 ‘꼬꼬면’이 난데 없는 상표권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이경규가 고안해 낸 ‘꼬꼬면’이라는 라면 이름을 보고 누군가 서둘러 상표 출원을 하는 바람에 ‘꼬꼬면’을 제품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경규로서는 ‘꼬꼬면’ 상표를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이경규는 어느 개인이 ‘꼬꼬면’이라는 상표 출원을 먼저 했기 때문에 ‘꼬꼬면’이라는 이름 자체로는 사용 및 등록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이경규의 꼬꼬면’으로는 상표 사용을 계속할 것처럼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경규의 꼬꼬면’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제품을 출시하게 되는 건 정말 괜찮은걸까?

상표 전문가의 입장에서 결론을 얘기해 본다면 현재 어떤 개인이 ‘꼬꼬면’을 먼저 출원했고 이 상표가 심사를 통해 등록이 될 경우, 이경규가 아무리 ‘이경규의 꼬꼬면’으로 제품명을 사용한다고 해도 개인이 먼저 출원하여 등록한 ‘꼬꼬면’의 상표권 권리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상표법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위의 기사에서는 ‘꼬꼬면’이 보기에 따라선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대응은 없기로 했다지만 ‘꼬꼬면’은 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말도 아니고 상표법상 다른 특별한 거절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식별력과 창작성을 가진 상표로서 현재로서는 등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상표법에 의하면 등록된 상표권은 자신의 상표

와 동일한 상표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에까지 그 권리를 미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꼬꼬면’과 ‘이경규의 꼬꼬면’은 동일한 상표는 아니지만 상표법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하느냐의 여부로 따진다. ‘꼬꼬면’과 같이 식별력이 있는 상표의 경우 식별력이 있는 다른 부분과 결합되었을 때, 즉, ‘이경규’와 같이 저명한 사람의 명칭이 결합된 경우, 일반수요자들은 이 상표를 호칭할 때 ‘이경규의 꼬꼬면’이라고 전체적으로 호칭할 수도 있겠지만 ‘꼬꼬면’이라고 분리 호칭할 가능성도 상당히 때문에 이런 경우 ‘꼬꼬면’이 이경규의 ‘꼬꼬면’인지 아니면 제3자가 출시한 ‘꼬꼬면’인지 일반수요자로서는 혼동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표의 유사 판단 방법을 강학상 ‘분리관찰’이라고 하는데 특허청이나 법원에서도 이러한 ‘분리관찰’ 방법을 이용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가상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제3자가 ‘PAVV’이라는 상표를 삼성전자보다 먼저 가전제품류에 출원하였으나, 삼성전자는 PAVV라는 상표를 부착한 텔레비전을 곧 출시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제3자보다 상표출원 준비가 늦어져 아직 상표출원 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자. 삼성전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꼬꼬면 사례와 같이 자사의 주지저명한 상호이자 상표인 ‘SAMSUNG’을 결합하여 ‘SAMSUNG PAVV’이름을 상표출원하고 이를 제품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상기 제3자는 특허청 심사를 거쳐서 ‘PAVV’를 등록받았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SAMSUNG PAVV’라는 상표를 등록받고 제품에 자유롭게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SAMSUNG PAVV’라는 상표는 상표법상 선출원주의 규정 때문에 ‘PAVV’와 유사하다고 하여 상표를 등록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삼성전자가 실제로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할 경우 선등록 상표인 ‘PAVV’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수요자로서는 음절이 긴 상표에 대해서는 약칭하여 부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SAMSUNG PAVV’

상표는 '삼성 파브' 로도 호칭할 수 있지만 '삼성' 또는 '파브' 로만 호칭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선출원(등록)상표인 'PAVV' 와 시장에서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SAMSUNG PAVV' 는 'PAVV' 의 유사상표로 간주되어 출원/등록을 먼저 한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는 '꼬꼬면' 을 출원한 개인이 상표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10개월~12개월 정도의 심사를 기다린 후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경규가 '이경규의 꼬꼬면' 을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지금 당장 그 개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표법은 출원한 이후에도 타인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일정한 손실보상금을 등록 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등록 전에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선출원한 개인이 서면으로 자신의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경고한 후부터의 손실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즉, 이경규가 지금 '이경규의 꼬꼬면' 이라는 제품을 출시할 경우, 악의적(?)으로 선출원한 그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이경규씨에게 경고할 것이고, 경고와 동시에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이경규씨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양도 또는 사용권 설정에 대한 협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그 협의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심사 후 등록결정이 되면 법적으로는 이경규씨에게 상표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경고 후부터 발생한 손해(그 손해는 경고 후 '이경규의 꼬꼬면' 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예상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이렇게 역올한 일이 정당한 상표의 사용자인 이경규씨에게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이경규씨에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만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전선에 뛰어드는 또는 뛰어 들려고 하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자신이 창작한 이름에 대해 자신만의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상표권 출원에 대해 미리 생각을 해 두어야 하며 제품 출시 전 조속히 출원하는 것만이 고유 브랜드 확보의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상표권,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 4 |

# 발명 365

## 지우개 달린 연필

**미** 국 필라델피아 근처에 하이만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소년은 진학도 포기하고 그림을 그려 팔았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보면 곧잘 지우개가 없어지고, 그것을 찾다보면 주의력은 떨어져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자 소년은 연필 옆에 지우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냈다. 연필 뒤에 양철을 감아서 지우개를 달아놓으니 여간 편리하지 않았다.

며칠 뒤, 소년의 친구가 와서 보고 그것을 많이 만들어 팔자고 했다. 이 지우개 달린 연필은 1867년 7월 특허가 나왔고, 친구는 그 권리증을 가지고 연필제조회사에 가서 팔았다. 연필 한 자루가 팔릴 때마다 매출액의 2퍼센트를 받은 하이만이 17년 동안 번 돈은 1천만 달러에 달했다.



# 엘 시스템아, 베네수엘라 경제학자의 조직경영론

## 국가의 이미지마저 바꾼 조직 경영론



이 태 원 계장

한국발명진흥회 운영지원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졸업  
논문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고찰



그림1. 쓰나미가 휩쓸고 간 폐허가 된 자리에 망연히 울고 있는 일본 소녀의 모습

### 자연으로부터 오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지금 우리는 기업의 운용이나 경영전략의 미진으로 인해 빚어지는 경제적인 위기를 넘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혹시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낮 빛을 엄히 하며 속으로는 미소를 짓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과 자연재해가 동서에서 동시에 터지면서 세계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과연 마음 편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일본 동북부 지역이 쓰나미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여파는 단지 일본 일부에 그치고 있지 않다. 아직 그 체감도가 사회 전반적으로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지만, 표면적으로는 먼저 여행업계의 소식에서 그 충격을 느껴볼 수 있었다. 3월 11일 일본의 나리타 공항 폐쇄 소식이 전해지자, 예약 취소가 잇달았고, 회복세와 상승세를 보이던 대표적인 모여행사의 주가는 급락했다. 최근 대항항공에서도 일본여행을 테마로 한 야심찬 프로젝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향후의 계획이 어떤 변화를 주게 될지도 주목하게 된다.

## 일본 산업계 지진 피해 상황

지역	피해 내용
미야기현	- 센다이 공항 침수 - 오나가와 원전 일부 화재, 일부 운전 정지 - 소니 6개 공장 중단 - 무라타제직소 공장 중단 - JX닛폰오일 공장 파손 - 도요타 공장 가동 정지
후쿠시마현	- 후쿠시마 1, 2, 3, 4 원전 운전 정지 및 불안정 - 닛산 자동차 등 6곳 가동 중단 - 파나소닉 공장 차질
아이오모리현	- 440만 가구 전력 공급 중단 - 파이오니아 공장 피해 - 르네사스 공장 조업 정지
지바현	- JFE 홀딩스 생산 중단 - 코스모스석유 공장 화재
이바라키현	- JSR 공장 생산 중단 - 도쿄가스 가스 공급 중지 - 스미토모금속공업 용광로 일시 정지 - 다이칸공업 생산 정지
도쿄	- 하네다, 나리타 공항 일부 폐쇄 후 정상화 - 신칸센 운행 중단 - 지하철 제한 운행

자료: 디스플레이뱅크

그림2. 일본 산업계 지진피해 상황

아직 최종적인 공식 피해규모가 집계된 것 같지 않지만, 일본의 경제적 손실을 10억 엔에서 15억 엔으로 잡고 있다.<sup>1)</sup> 5억 엔이란 차이는 결코 작지 않은 것인데, 손실액을 측정하는 데에 이런 편차를 보이는 것에서부터 그 경제적 파급력이 좀처럼 가늠할 수 없다는 방증이 아닐까. 더구나 지난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로 일본의 주요기업들이 가스, 원자력에너지, 토목분야 등 소위 기간산업에 다시금 투자를 하던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설비 및 부품공장이 모여 있는 동북부지역의 피해가 일본 경제 전체에 어느 정도의 위협을 줄지 아직은 미지수다.

일부 낙관론자들은 고베대지진 이후 오히려 경제회복 노력을 통해 일본경제가 성장한 바와 같이, 이번 위기 역시도 회복을 위한 노력이 경제부양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sup>2)</sup> 하지만, 1995년의 일본은 세

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반면, 지금은 중국의 위협에 한쪽 무릎을 꿇은 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나 민간차원에서나 일본과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일본의 회복이 가속화되어야겠지만, 아직은 낙관론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림3. 3월 17일에 있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리비아 군사개입안 표결에 기권했다.

## 전쟁으로부터 오는 예측은 되나 대응키 어려운 위기

반면, 이번 리비아 사태는 자연재해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어쩌다 보니, 자연재해와 전쟁이라는 인재(人災)를 동시에 맞게 되었지만, 우선 자연재해의 영향력과 파괴력에 대해 우리는 회복을 위한 노력 외에 사전적인 대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편 자연재해와는 달리 전쟁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인간사이기는 하다. 하지만, 비록 예측을 하고 사전에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해도, 전쟁 사태의 확산에 대해서는 또한 예측이 어려워 경제적인 손실 역시 비록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한적이라고 하겠지만, 자연재해의 영향보다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전쟁은 인간의 일이기 그 지속성을 판가름하기 쉽지 않다.

- 1) 직접 피해액 고베 때의 배가 될 것. 일본 경제연구센터의 이와타 이사장은 “고베 지진의 직접 피해액은 10조 엔 정도였으나 이번은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고베 때는 사회 인프라시설이 주로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지진은 지진·쓰나미의 범위가 넓었고 원전 폭발로 전력공급 애로 등이 겹쳤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3. 18일자)
- 2) 리처드 쿠퍼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일본 경제가 대지진 및 쓰나미 여파로 올해 2분기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지만 대재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세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협받고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대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경제 3. 20일자)



그림4.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 현황(문화일보 3. 22일자)

특히나 중동과 서방세계 간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모습은 마치 우산 장수 아들과 짝신 장수 아들을 가진 어머니와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중동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플랜트 등 대규모 건설사업, 자동차 산업 등은 다시금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리비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안도의 숨을 쉬기에는 장기적인 중동평화의 위협이 에너지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특히 이번 전쟁 역시 과거 미국이 석유를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했다는 비난에 이어, 여타의 서방국가보다 리비아에 호의를 보이던 프랑스가 앞장서서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가 다름 아닌 원유확보에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가 주도를 하건 중동은 석유와 종교를 이유로 서방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기도 해서, 때로는 밀월관계를 맺는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서방의 맹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하는 경우, 반미 성향을 가진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한다. 이번에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서방의 리비아 공격을 ‘미친 제국주의’라고 매도하면서 ‘리비아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국의 외교부와 러시아 외무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sup>3)</sup>

###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애플에 디스플레이 부품을 납품하는 LG디스플레이의 경우도 히타치 화학으로부터 디스플레이 제작에 들어가는 필름인 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를 납품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구조가 각국의 부품 단위에 들어가는 소부품을 또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빚어지는 경제적인 타격은 비단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동차 부문에서도 쌍용자동차가 2007년 이후 선보인 신차, 코란도C의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코란도C의 엔진부품은 쓰나미의 직격탄을 맞은 센다이시에 소재한 일본 테크노메탈사다. 르노자동차에 들어가는 캐나다산 워터펌프는 일부 일본기업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 역시 감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한 국내에서 소비되는 철강재의 20%는 일본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그림5. 일본 대지진이 세계 자동차 산업에 미친 영향(조선일보 3. 19일자)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맞물린 부품산업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 전하고 있다. 앞으로 2~3개월 이후가 더 심각하다. 아직까지는 재고물량으로 버티고 있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도 물류정상화가 이루어지지

3)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유감표명 이전에 개최된 3월 17일의 안전 보장이사회에서 군사개입안 표결에 기권을 하였다.

않으면, 엔진없는 자동차, 기어박스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할 실정이다.

어찌보면, 당장에 생산차질을 빚는 산업계의 소식보다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염려해야 할지 모른다. 일본 후쿠시마의 원자로 외벽의 파괴와 원자로 내의 온도상승 등으로 일본열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역시 방사능의 피해 위협을 겪고 있다. 단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협만이 우리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일본열도와 한반도의 거리상의 밀착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전역에 대한 방사능 위협여파가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에도 불안 요소가 담겨 있다.<sup>4)</sup> 그리고 일본보다는 중국에 대한 농수산물의 수입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도 보인다. 방사선에 의한 해양의 오염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 미래, Predict가 아닌 Making

현재와 같은 수많은 미지수와 위협 속에서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닌 미래에 대한 계획과 확고한 신념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어떠한 예측도 미래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한 때문이다. 현재의 기술가치판단과 재정전략을 통해 전세계가 극소한 부품들을 나누어 쓰고 있는 세계경제 구조 하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나 전쟁은 곧 생산의 중단사태로 이

어질 것이 자명해졌다. 그렇다고 자기 제품을 버리고 당장 대체 생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구도 애플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다. 오히려 IBM이나 인텔이 애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말들이 많았다. 현재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애플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제품 자체에서 나오는 강력한 흡인력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애플이 끊임없이 Apple Computer라는 이름을 유지해 온 까닭이다. 애플은 아마도 상당히 오랫동안은 Computer라는 단어를 떼어내지 않을 것 같다. 애플은 말 그대로 컴퓨터 제조기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이미지는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모니터와 키보드로 구성된 단말기로 갖고 있어서 애플을 컴퓨터 회사라고 생각지 않을 수 있지만, 애플은 분명 컴퓨터 회사다. 더구나 자체적으로 CPU와 같은 컴퓨터의 핵심 부품을 만들지 않아도 분명 컴퓨터 회사다.

다소 엉뚱할지 모르지만, 애플의 성장과 명성에 빗대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직이 있다. 조직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이 아닌 재단이기 때문이다. 애플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사명과 미션에 충실한 체제를 구축하고, 그 설립자 역시 애플의 스티브 잡스에 못지않은 다방면에 능력과 관심을 갖춘 다재다능한 인물이다.

### 기업보다 기업다운 조직, 엘 시스템마

올 3월에 한중일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다가, 이번 일본 대지진 사태로 방문이 취소된 카라카스 유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엘 시스템마의 설립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그 사람이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의 오케스트라를 후원하는 지원사업들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그 모범사례가 바로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마<sup>5)</sup>이다.

비록 유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재단이지만, 기업은 물론이려니와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모든 이들이 모범사례로 삼아볼 만하다. 먼저는 이 조직이 만들어 나가는 비전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

4) "일본을 '가까운 이웃'으로 둔 한국경제 역시 일본위기의 쓰나미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늘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대일본 수출은 전체 수출의 6%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은 15%에 이른다. 전기 전자, 정밀기계, 부품소재 등에서 일본의존도가 높고 한국 관광산업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4.4%에 달했다. 일본위기 외에도 세계경제의 악재가 곳곳에서 한국경제를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다. 아랍·북아프리카 사태를 비롯해 유럽 재정위기, 중국 긴축, 원자재 가격폭등 등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악재들이 단 시간에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 국가부도위험지수인 신용부도스왑(CDS)프리미엄이 103을 기록하며 전일대비 2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말에 비하면 8포인트 상승했다. 1년 전 75에 비하면 28포인트나 뛰여 부도위험이 27.2% 상승했다." (내일경제 3. 16일자)

5) 베네수엘라 국립 청년 및 유소년 오케스트라 시스템 육성재단 (Fundación del Estado para el Sistema Nacional de las Orquestas Juveniles e Infantiles de Venezuela, FESNOJIV)이 원 명칭이다.



그림6. 영화로도 소개된 엘 시스템아 청소년 오케스트라.

### Play & Fight

이 재단은 현재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이나 마약과 총기에 물든 청소년들을 음악으로 구원했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음악 운동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가 앞서기는 하지만, 애초부터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애초의 생각은 순수하게 보다 젊은 음악가를 배출하여 체계적인 음악교육과 연주의 기회를 줌으로써, 탄탄한 오케스트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청소년들을 접하면서, 이 나라의 교육환경을 결코 외면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수도인 카라카스는 어느 지역보다 빈민층이 많고, 심지어 청소년 시절부터 마약과 범죄에 손을 담그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런 이들에게 심어진 음악이라서 그럴까. 엘 시스템아가 모토로 하는 표어는 바로 ‘연주하라! 그리고 싸우라!(Play & Fight)’이다.

하지만 음악을 위한 환경은 더욱 좋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는 앞서 리비아 사태에 보인 차베스 대통령의 태도와 같이, 서방의 음악인 고전음악과 이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렇기에 더욱 확고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이 절실했던 것이다. 이를 인식한 아브레우 박사는 음악가 이면서,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음악가로서의 아브레우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것에 조직의 핵심목표를 삼았다. 그리하여 당시에 해외파와 국내파 음악가들을 모아 음악교육을 위한 인적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핵심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어느 기업이나 어느 조직 모두의 기본원칙이 아닌가.

### 시스템으로서의 엘 시스템아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그는 이 운동을 조직화했다. 재단을 설립하고, 이 재단의 이름으로 베네수엘라에 지역단위의 오케스트라를 조직해 나갔다. 역시 해당지역에 연고를 가진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단체들과 협력했다.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아브레우 박사는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계산적이라는 말은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규모를 항상 염두에 두었음을 의미한다. 소위 비영리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영리적인 방법이 기반이 되어야 함을 아는 경제학자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베네수엘라가 리비아와 마찬가지로 산유국으로서 세계 5위의 석유수출국임을 적극 활용하여, 석유경제학을 연구테마로 했던 인물이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문화적 경제적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베네수엘라의 이미지를 변혁해 나간 혁신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활동은 음악과 경제분야에만 머물지 않았다.

자신의 영향력을 재계와 정계에도 뻗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열정은 소년과 소녀들의 손에 바이올린을 쥐어주는 데에만 있지 않았다. 숲과 나무를 모두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기



그림7. 2010년 10월에 열린 서울 평화상 시상식에 수상자로 방한한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

업에서도 이런 양안의 인물을 찾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는 정유회사나 석유기업의 CEO가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정계에 나서는 것과는 달랐다. 그는 정객이 아니라 정치가였고,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엘 시스템아의 시스템화에 보탬다. 엘 시스템아는 영어로 하면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조직이다. 체계를 갖춘 조직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창립자를 닮은 교육프로그램

아브레우 박사 자신이 음악과 경제와 정치를 겸하여 활동하는 다재다능한 인사였기에, 엘 시스템아의 교육도 음악 한가지만을 두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록 음악을 기본으로 가르치지만 음악가나 연주자를 삶의 최종적인 목표로 갖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음악이 아닌 음악을 만들어 내는 악기를 제조하는 마이스터를 키워내는 기능전수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교교육은 물론, 엘 시스템아의 행정과 운영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CEO가 해야 할 일을 고스란히 이해해 볼 수 있다. 기업이 목표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바, 정부와 정계에 대한 협력을 유도하고, 내부의 인력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특히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님을 보게 된다.

엘 시스템아 내에서 오케스트라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는 마리아 앙헬리나 셀리스 사실은 여사도 음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이벤트 회사의 기획자였던 그녀가 현재는 엘 시스템아의 국내외 공연과 교육 및 예술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있다. 음악의 나라 베네수엘라를 구축하는 데에 문화 대사로서의 사명을 엘 시스템아가 갖게 한 장본인인 셈이다. 엘 시스템아는 이렇듯 자기를 돕는 자를 교육시키는 힘까지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란 이런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비록 셀리스 여사가 이벤트 기획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다고는 하지만, 엘 시스템아에게 문화 대사로서의 역할을 만들어 낼 정도의 힘은 틀림없이 엘 시스템아의 문화와 교육이 쥐어 준 것이다. 아브레우 박사는 음악하는 힘의 바탕은 결국 지속적인 학습과 부단한 자기노력에 있다는 것을 엘 시스템아에도 심고 있다.



그림8. 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삼십지휘자가 된 엘 시스템아 출신의 신예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

### 협연하는 CEO

“규율과 재능, 음악적 탁월함은 특정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애를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든 남녀의 것임을 보여주겠다!”

아브레우 박사는 엘 시스템아의 비전을 전세계와 함께 나누고 있다. 앞서 아브레우 박사의 ‘정치적인 영향력’ 이라고는 했지만, 그것은 아브레우 박사의 목표의식과 목표

를 향한 열정이 정치 분야에서도 드러났기 때문인 것이지 그가 결코 정치적인 인물이지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1991년 5월에 엘 시스템에 속한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일본 순회 공연을 가졌던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때의 분위기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 '일본인들이 목표에게 눈을 돌리게 하지는 못했다. 규율과 재능, 음악적 탁월함은 특정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애를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든 남녀의 것임을 보여주겠다는 목표가 단원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다.' 아브레우 박사가 심어놓은 이 재단의 목표가 결코 내부적인 영향력만을 미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무렵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홍보, 기획 개발 분야에서 일했던 마리아 앙헬리나 셀리스는 당시 도쿄의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재정적 후원을 맡아주었고, 일본 측이 오케스트라 운송 전문 회사와 계약을 맺어 공연 여행을 지원한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고 전한다.

일본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 물론, 이 오케스트라의 성격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 또한 엘 시스템 재단의 정신과 문화가 끼친 영향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9. 청소년 오케스트라 답게 자유로운 복장을 한 엘 시스템 오케스트라의 연주모습

이러한 엘 시스템의 목표와 정신의 공유는 그들이 공연을 기획하는 방문국과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다. 그보다 전에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음악가, 특히 지휘자들과의 만남에서 공유의 과정을 밟고 있다. 살아있는 지휘 전설로 불리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클라우디오 아바도는 물론이러니와, 세계적 오케스트라를 두루 경험한 주빈 메타, 주세페 시노폴리, 그리고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인 사이먼 래틀 등 거장들과의 협연도 끊이지 않고 이루어졌다. 플라시도 도밍고도 엘 시스템 소속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음악가 중 하나다.

이러한 모습들 모두, 조직의 수장이 경영과 기술의 거목들과 임직원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CEO는 결코 밑으로부터의 기안과 계획을 자르고 선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과 비전을 이끌고 자극하는 사람이라는 데에서 아브레우 박사와 같은 이는 기업의 CEO가 된다고 해도 애플 못지않은 기업을 키워낼 사람이 아닐까 싶다.



그림10. 우리나라에도 결손아동들을 음악을 통해 키워내는 전통적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들이 있다.

### 마에스트로의 경영법을 기대하며...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 경영이 나온 것처럼, 조금만 잘 연구하면 아브레우 박사로부터 마에스트로 경영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엘 시스템을 만들어 낸 아브레우 박사의 머

리에는 다음과 같은 비전이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빈민가의 어린이에게 악기를 통해 음악교육을 함으로써, 그의 가족들이 변하고, 이어 그러한 변화가 마을과 도시의 분위기를 바꿨으며, 그곳에 구성된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Cultural Symbol)이 되었다. 특히 카라카스와 같은 수도의 변화는 곧 베네수엘라의 변화로 나타났다. 이로써 베네수엘라는 음악의 기원이 왕성한 문화국가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그러한 변모의 바람이 중남미만이 아니라, 상호 적대적인 미국에서 마저 엘 시스테마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그 바람이 마치 카오스 이론에서 언급된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처럼 한반도 땅에까지 불고 있는 은 우연이 아닌 실질적인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로는 전쟁, 그리고 좌로는 자연재해에 이은 인재의 파괴적 영향력 속에 휘둘리고 있다. 분명 이러한 전지구적인 충격파의 영향은 이 세대 혹은 다음 세대의 가치관과 철학을 변모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져오는 것이 결코 비관적인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비전과 사명이 갖춰져야 한다. 틀림없이 미래를 향한 확고한 비전은 성장과 발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옳고 바른 것에야 말로 흡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음악을 즐기고 좋아하는 긍정적인 문화를 애플의 아이팟이 형성해 냈다. 물론 MP3플레이어라는 기술이 순조로이 발전하도록 만든 대한민국의 기술력도 한 몫 하였다. 그리고 분명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없었더라면, 전세계 단위로 전파할 수 있는 다기능의 휴대전화도 쉽게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단지 통합의 능력, 달리 말하면 문화형성력이 부족했을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음악이나 음식과 같은 문화의 요소를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재해 속에서는 희망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며 전쟁 속에서는 화합의 시발점 혹은 기폭제가 되어 줄 수 있다. 우리에게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분명 문화가 부족할 뿐이다. 이 즈음에서 회복과 화해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마에스트로 CEO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2011. 4 |



# 일회용 냅킨(핑거냅)

**TAKOS** CREATIVE MANUFACTURE



(주)타코스

세계 최초 특허품  
**Finger Nap**<sup>®</sup>  
손가락 전용 위생장갑 핑거냅

World Patent P  
특허등록  
상표, 의장등록

핑거냅은 치킨, 피자, 도넛 등 기름진 음식물을 청결하게 섭취하기 위해 손가락에 착용하는 신개념 1회용 위생 미니 장갑입니다.

Free Size Eco-Friendly

Convenient: Insert two fingers easily

Economic: It is economical compared to the usage of napkins

Sanitary: Eat food with your hands prevents the spread of the bacteria

Environmental: Biodegradable material is environmentally friendly

CHICKEN DONUTS PIZZA HAMBURGER

부산지 사하구 괴정4동 1126-14번지 / Tel. 051-208-8357 / Fax. 051-208-8353 / www.fingernap.com  
copyright © TAKOS. All Rights Reserved.

PIZZA HAMBURGER

www.fingernap.com

I'm different  
**Finger Nap**  
핑거냅<sup>®</sup>

핑거냅은 치킨, 피자, 도넛 등 기름진 음식물을 청결하게 섭취하기 위해 손가락에 착용하는 신개념 1회용 위생 미니 장갑입니다.

1 STEP 2 STEP 3 STEP 4 STEP

CHICKEN SNACK

Sales Promotion For business use

부산지 사하구 괴정4동 1126-14번지 / Tel. 051-208-8357 / Fax. 051-208-8353 / www.fingernap.com  
copyright © TAKOS. All Rights Reserved.



**(주)** 타코스는 1992년에 설립되어 끊임없는 연구와 차별화된 제품개발을 하는 디자인 제조업체로 시장조사에서 제조까지 전 과정을 디자인과 고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며 소비자용(Customer Goods), 산업용(Industrial Goods) 제품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부산최초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타코스는 장애인 고용의 모범업체로서 다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이전받은 기술 포함)

	출원			등록		
	국내	해외	계	국내	해외	계
특허	1		1	2		2
실용신안				5		5
디자인	11	2	13	49		49
합계	12	2	14	56		56

### 성공사례 기술개요

권리명칭	일회용 냅킨 (상품명: 핑거냅)					
출원번호	10-2006-0033060			등록번호	10-0704707	
제품적용 실적	적용 제품수	6품목	총 매출 실적	30백 만 원	국내매출	20백만 원
					해외매출	10백만 원
기술의 내용	<p>본 기술은 치킨, 피자 등을 집을 때 기름이 묻지 않도록 손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1회용 냅킨에 관한 것이다.</p> <p>본 기술에 따른 냅킨은 복수의 피자부가 구비된 기재와, 기재의 피자부 각각을 따라 일정공간을 갖는 포켓부로 냅킨을 구성하여 포켓부에 손가락을 끼운 상태로 피자부로서 음식물을 집어서 사용하도록 함으로, 피자나 치킨 등의 기름진 음식물을 집더라도 손에 기름을 묻히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p> <p>이는 기름진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편의와 위생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1회용 냅킨의 소모 감소로 인한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홍보 가능하므로 본 기술제품을 적용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향상을 통해 매출 증대로 연결 가능하다.</p>					

개발배경

가. 청결한 위생

2009년도에 발생한 신종 전염병의 확산으로 개인의 위생 의식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지난해 신종플루 등의 유행으로 전염병 환자가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나. 맨손으로 핑거푸드 섭취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음식물 섭취 시 편의와 위생에 대한 인식과 자각으로 일반적으로 1회용 냅킨을 사용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고 맨손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섭취하는 모습을 일상에서 다반사로 확인할 수 있다. 맨손을 이용할 경우 위생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갓 튀겨 나온 뜨거운 제품일 경우 손을 데일 우려 또한 있다. 시식 후의 뒷정리를 위해 1회용 냅킨(물티슈 포함)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자원적인 낭비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더 나아가 티슈 생산을 위한 펄프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작위의 벌목 및 1회 용품 폐기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환경파괴 및 자원고갈의 요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다. 1회용 소모품 절감

소모품이란 쓰는데 따라 닳아 없어지거나 못쓰게 되는 물품으로서 종이, 잉크, 용기, 포장지 등 현재 무수히 많은 1회용 용품들이 주위에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냅킨은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음식을 먹을 때 가슴에 착용하는 직물 냅킨과 음식을 먹은 후에 이물질 제거를 위한 1회용 종이 냅킨으로 구분되는데 1회용 종이 냅킨의 경우 대부분 치킨,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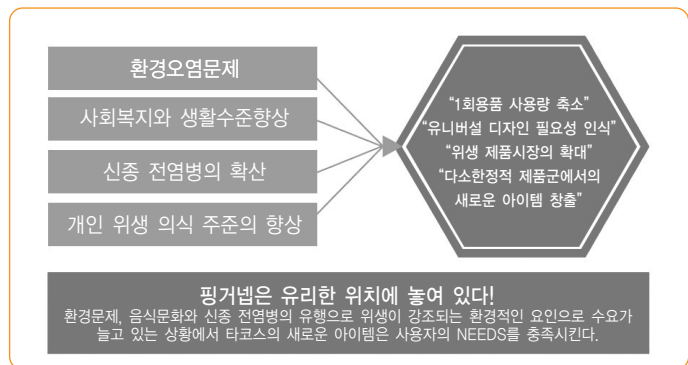
자, 도우넛 등의 기름진 음식물을 집거나 맨손으로 시식 후 손에 묻은 기름을 제거하거나 입을 닦기 위해 사용된다. 종이 냅킨은 제품의 백색도를 높이기 위해 형광물질을 함유한 것과, 무형광으로 제조한 것으로 구분되며 형광물질은 발암물질이고, 장기간 사용 시 피부 부작용을 야기하므로 음식물 포장기나 화장지(얼굴세정용), 냅킨, 키친타올, 도시락, 종이컵에는 형광물질을 극소량 함유하거나, 무형광으로 제조하도록 규정된다. (보건복지부고시)

라. 시식 후 청결 유지

기존의 1회용 종이 냅킨은 정방형으로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고 기름진 음식물인 피자, 치킨 등을 집을 때도 이용하지만, 피자나 치킨을 집을 때는 양손을 이용하여 종이 냅킨을 감싸면서 집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종이 냅킨을 이용하더라도 음식물에서 베어 나오는 기름기가 사용자의 손에 묻게 되어 이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개인위생 및 건강을 중요시하는 현대인에게 있어 제품에 형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 요소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또한 시식 후 종이 냅킨을 이용한 기름기 제거는 완전한 세척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오염의 전이 및 개인위생의 불안 요소로 작용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발명을 고안하게 되었다.

개발 목적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치킨, 피자, 도넛 등을 먹을 경우, 냅킨으로 음식물을 감싼 채로 먹게 되고 그때 나타나는 불편함(냅킨이 음식물과 같이 씹히거나 입안에 들어가서 이물질에 대한 불쾌감 등)과, 음식물에서 베어 나오는 기름기가 손에 묻어 손을 씻어야되는 일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을 먹을 때 위생과 편리성을 더하고 더 나아가 친환경적인 소재로 그린마케팅을 통한 수출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 기존제품과의 차별화

비경쟁 유사 제품군을 비교 했을 시 제품의 가격 편의성,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제품이다.

구분	TAKOS	A사	B사	C사	D사	E사
제품명	핑거넵	크린장갑	일회용 위생 장갑	에코쉽 친환경 향균장갑	MHG-058	-
재 질	LDPE	LDPE	LDPE	천연 CCB	면	Latex
가 격	3,000원	1,800원	3,400원	2,500원	6,000원	-
매 수	100매	50매	100매	40매	10매	-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초 특허상품 손의</li> <li>- 세균에서 보호</li> <li>- 위생적인 습관에 기여</li> <li>- 회용품 사용량 축소</li> <li>- 친환경적인 재질 사용 가능</li> <li>- 음식섭취시 편리하게 사용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 1위</li> <li>- 보험 판촉물 세트판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서 가장 두껍고 (1cm) 긴 장갑</li> <li>-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한 재료만을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분해성, 향균력 99.9%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0%</li> <li>- 손이 오랫동안 보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플루엔자와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을 짧은 시간 안에 박멸하고 반영구적 살균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li> <li>- 미국, 일본 심사 통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D DOT AWARDS 수상</li> <li>-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는 아이템</li> <li>- 시장확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li> </ul>

## 시제품 제작 및 사용성 평가

10대 대상의 사용성 평가



고령자 대상의 사용성 평가



20대 대상의 사용성 평가



주부 대상의 사용성 평가



유니버설 디자인 핑거캡 가이드라인 도출 및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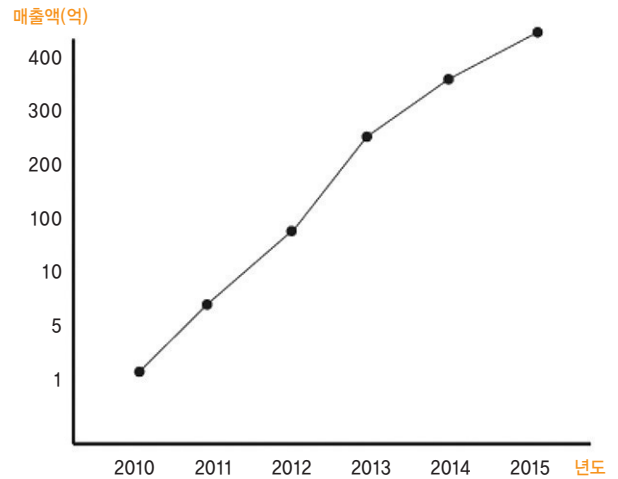
### 당사만의 독창적인 마케팅 비법

SWOT 분석을 통해 브랜드의 인지도와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전시회 박람회, 산학 프로젝트팀, 및 입소문 마케팅, 오픈마켓 판매를 전개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b>Strength</b> • 다수의 특허 출원으로 독자적 시장 구축 • 위생제품시장의 높은 성장률 • 다년간 축적된 경험	<b>Weakness</b> • 브랜드 아이덴티티 및 전략의 부재 • 낮은 브랜드 인지도
<b>SWOT Strategy</b>	
<b>Opportunity</b> • 중국, 인도 등 높은 수출가능성 기대 • 국가적인 위생관리 강조 • 시장의 확장 가능성	<b>Threat</b> • 소비자 인지도 부족 • 단가측면의 소비자 부담 • 특허권 위협

### 매출액 예상치

2015년까지 예상 매출액을 400억 원으로 내수 및 수출을 통해 달성



### 사업화 성공 요인

-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제품 완성도 향상
- SWOT 분석을 통한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 (전시회, 입소문마케팅, 오픈마켓 판매 전개)
- 산학협력 기관 협조를 통한 연구인건비 절감 및 제품개발의 조기 완성

### 시장 규모

신규시장에 신규 제품을 투입하여 시장을 개척하는 타코스의 마케팅 방식은 기존 제품을 기존 시장에 내거나 기존 제품을 신시장에 내는 전략보다는 위험 부담이 높지만 2년간의 시장조사와 분석 마케팅방향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장에 투입할 시 상상 이상의 기대와 성과가 나타나질 것으로 기대한다.

### 환경변화에 따른 수익증대 기대



2011. 4 |

# Information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 건강하게 삽시다
  - KIPO NEWS
  - 재미있는 퍼즐
  - KIPA NEWS
-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경상북도

Andong



# 안동사과

안동은 사과재배 최고의 환경으로 당도가 높고 적절한 신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육이 아삭거리며 색상이 뛰어나므로 사과브랜드 중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



| 상표명 | 안동사과

| 권리자 | 사단법인 안동사과발전협의회

| 등록번호 | 제 51호

| 상품분류 | 제 31류 사과(신선한 것)

연락처  
사단법인 안동사과발전협의회  
054-856-1240



### 01 • 유래

안동사과의 시초를 알아보면 지난 1926년 10월에 미국인 선교사 크리스더(한국명 권찬영)씨가 국광, 홍옥 등 사과나무 100여 그루를 안동 녹전면에 심은 것이라고 한국식품연구원이 실시한 안동사과에 대한 지리적 특성 및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영역에서 밝혀졌습니다. 안동시에서 가장 오래된 사과나무를 안동시 녹전면 녹래리에 50년 정도 된 나무가 있는데 이 사과나무 원목은 국광이나 부사를 접목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 02 • 특성

사과의 맛은 토양, 수분, 햇빛이 좌우하는데 안동사과는 이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자연환경 아래 재배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안동사과는 당도가 높고 적절한 신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육이 아삭거리며 색상이 뛰어나므로 사과브랜드 중에서 우수한 사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

Gurye



# 구례산수유

산수유는 층층나뭇과의 낙엽 교목인 산수유나무의 열매로 종자는 긴 타원형이며, 약간의 단맛과 함께 짙고 신맛이 강한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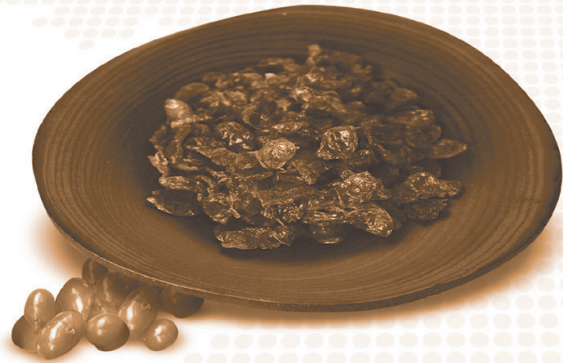
| 상표명 |  
구례산수유

| 권리자 |  
구례산수유 영농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 21호

| 상품분류 |  
제 31류 산수유

연락처  
구례산수유 영농조합법인  
061-781-8788



01

### • 유래

산수유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중국 산둥성에 사는 처녀가 구례군 산동면으로 시집을 때 처음으로 가져다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 산수유 시목이라 여겨지는 산수유나무가 구례군 산동면에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산림경제, 동국여지승람, 승정원일기,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산수유가 특산품으로 재배되고, 약재로 처방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산수유가 처음 생산된 시점은 삼국시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02

### • 특성

구례산수유는 전국 생산량의 73%, 수확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품질의 우수성으로 다른 지역 산수유에 비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지역 주요 산지의 산수유에 비해 관능 품위 기준으로 볼 때 그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칼륨, 칼슘, 아연과 같은 무기성분이 많이 검출되고 또한, 사과산이 가장 많이 검출되어 신맛이 강한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계속 확산되어야 한다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김진범



2009년 건강보험에서 진료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질환은 충치이다. 1년간 충치치료로서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6천913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암 진료비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치아의 여러 면에서 충치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음식을 씹는 면으로서 깊고도 좁은 틈새가 나 있다. 이 틈새는 칫솔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아서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완벽하게 닦기가 힘들다. 근래에는 충치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불소 이용과 실란트(틈새메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란트는 충치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치과에서 치아마다 시술해야 하므로 경비가 많이 든다. 불소이용 중에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충치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수불사업 비용은 1인당 연간 5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불소가 든 수돗물로 요리한 음식을 먹기만 해도 충치가 예방될 수 있다.

불소가 전혀 없는 수돗물은 없지만 강물을 원수로 생산한 수돗물에는 충치예방에 필요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충치 예방에 필요한 불소농도의 적정수준은 0.8 ppm으로 결정되어 있다.

수돗물에 불소를 적정농도로 맞추는 수불사업은 1945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1930년대에 록키산맥에 있는 콜로라도 지방에는 치아에 갈색 반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들이 마시는 물에 불소가 지나치게 많았음을 찾아냈다. 또한, 반점치가 많이 발견되는 지방 사람들은 충치가 훨



씬 적게 생기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연구결과, 1 ppm 정도의 불소가 든 물을 마시는 지방 사람들은 반점치는 별로 생기지 않으면서 충치가 적게 생기는 현상을 찾아내었다. 수불사업은 적정농도의 불소가 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모방하여 시작한 환경보건사업의 일종이다.

수불사업은 충치예방 효과가 확실하면서도 전신건강에 안전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수십 년간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진해시에서 처음으로 수불사업을 시작한 이후, 울산광역시, 안산시, 안성시 등 여러 곳에서 실시 중이며 외국 못지않게 충치예방 효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세계치과의사연맹도 불소의 안전성 및 효용성에 대한 선언문을 통해 “불소는 50년 넘게 전 세계에 걸쳐 충치를 예방하는데 안전하고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으며, 수많은 학회와 전문가, 정부기관 등에서 안전성을 인정하였다”고 강조하며, “수불사업은 충치예방과 치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광 박사는 1993년 당시 수돗물에 불소를 11년간 첨가하였던 청주시와 첨가하지 않은 수원시에서 12-18세의 충치치료비를 비교하였다. 6개월간 1인당 치과진료비는 수원시는 3,848원이었지만, 청주시는 2,032원으로서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설악산 오색약수를 비롯한 유명한 약수물에도 대부분 불소가 많이 들어 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돗물의 불소농도는 녹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30년이나 수불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위해작용도 발견된 적이 없으며, 보건사업 재정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충치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특히 자기 손으로 이를 닦을 수 없는 장애인들의 치아건강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

제공 건강길라잡이(<http://www.hp.go.kr>)

##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지식재산정책 알리미로 나선다

특허청이 젊고 참신한 감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네티즌에게 알릴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을 선발하고, 지난 3월 25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12명으로 구성된 제3기 특허청 블로그 기자단은 오는 12월까지 지식재산 현장을 직접 취재하여 특허청 블로그(아이디어로 여는 세상:blog.daum.net/kipoworld)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발대식에서는 기자 임명장 수여에 이어 기사작성법 및 인터뷰 요령 등에 관한 전문 강사의 교육이 있었다.

이어 지식재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발명의 전당, 심판정 및 발명 교육센터를 견학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찬영(경상대학교 4학년)군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여 흥미로운 기사를 작성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소통을 위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제3기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운영에 있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동영상 현장중계 등 다양한 홍보 기법도 적용할 계획이다.

## 대학·공공(연)의 ‘흙속 진주 찾기’

특허청은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특허기술을 발굴하여 산업계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유망특허기술 사업화 전략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유망특허기술 사업화 전략 지원” 사업에서는 1차적으로 각계 전문가를 투입하여 대학·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중에서 시장지배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발굴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선별된 기술에 대해 특허분석 및 보강, 해외 권리확보지원, 기술수요시장 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특허 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지원한다.

최근 국가 연구개발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학·공공(연)의 특허출원 건수는 2008년 15,503건, 2009년 18,134건, 2010년 19,172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특허 건수도 2008년 38,078건, 2009년 42,366건, 2010년 44,56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특허청이 실시한 “2010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의 활용률은 30.3%로 민간 기업의 특허 활용률<sup>1)</sup> 56.5%에 비하면 아직도 저조한 편이다.

이는 대학·공공(연)이 특허 사업화에 따르는 기술가치평가, 기술수요기관 발굴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학·공공(연)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대학들이 국내·외에서 기술이전 성과를 올리고 있다.

1) 민간기업의 통계는 방어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함

## 세계최초 3D도면 디자인출원, 성공적 시행

**트** 허청은 2010년부터 1년간 시행된 3D 도면을 통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총 786건(전체디자인등록출원의 1.4%)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과 개인 출원이 9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품 개발 시 필수적으로 만들고 있는 3D도면을 별도 가공 없이 곧바로 출원토록 한 세계최초의 3D도면 출원시스템으로써 디자이너와 출원인의 편의를 크게 제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2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과 개인의 활용률이 높은 이유는 도면제작시간을 단축하여 빠른 권리화를 원하는 중소기업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2011년도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개시

**트** 허청은 “제주시 등 10개 기초지자체에 대하여 2011년도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은 기초지자체의 지식재산 조례제정 및 전담조직 확보 등 인프라구축을 지원하여, 지자체가 지역 주민과 기업을 위한 교육 및 발명체험행사, 특허정보제공 등의 지재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공모를 통해 매년 5개 기초지자체를 지식재산도시로 선정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강원 원주시, 경북 안동시, 광주 남구, 대구 달서구, 충북 제천시, 2011년에는 경남 진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북구,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가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었다.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도시 조성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금년에는 10개 도시에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2010년도에 선정된 지식재산도시들은 지식재산 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행정적 지원의 인프라를 갖추고 총 76회 6,654명을 대상으로 지재산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대구 달서구는 2010년도에 “지식재산도시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토요가족 창의교실”, “신나는 발명체험 한마당”, “자연과 함께하는 가족 발명캠프”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경북 안동시는 전통문화유산인 고택의 12개 문중에 대해 휘장 제작 등 브랜드 사업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 밖에 광주 남구는 시민들이 직접 발명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발명공작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7건의 주민 특허를 등록하고 6,000여만 원의 로열티 수입을 올리는 성과가 있었다.

2011년도에는 새로 선정된 5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10개 지식재산도시에서 약 30,000명을 대상으로 지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약 17,000명의 주민이 발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35회의 발명 체험행사를 개최하며, 300여 건의 선행 특허·브랜드 조사 및 출원비용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진주시에서는 향토기업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의 이미지 및 가치를 극대화시킬 예정이고, 부산 북구에서는 전통시장의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 권리화 바람

경기도의 “잎맞춤”, 부여군의 “굿뜨래”, 음성군의 “햇사래”, 정읍시의 “단풍미인”, 보성군의 “녹차수도 보성”, 동해시의 “동트는 동해”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공모한 지자체 공동브랜드(농·축산물, 식품 등)의 권리화 바람이 불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자체의 공동브랜드 출원건수는 2007년 1,356건, 2008년 1,632건, 2009년 1,728건에 이어 지난해 1,9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경북 경산시는 2006년에 1건, 2008년에 2건에 불과하던 출원건수가 지난해에 148건 (2010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출원건수 1위)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 힘 내세요, 일본 특허출원인

특허청은 지난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동북지방 태평양연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특허출원인들이 정상적으로 특허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우선, 특허는 특허유지 수수료 등 특허료를 납부해야 그 권리가 유지되지만 이번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허료 납부기한을 지진복구 후까지 연장하였다.

둘째, 출원된 특허의 심사는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지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진행을 원하는 시점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특허심사 진행 중 출원인이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4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지만 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특허심사 결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건에 대하여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나 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진복구 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하였다.

그 외에도 다수의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상표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에 특허청에서 마련한 ‘일본 대지진으로 영향을 받은 특허절차의 구제방안’은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출원인들이 특허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출원이 거절결정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구제방안이 시름에 잠긴 일본 특허출원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재미있는 퍼즐

재미있는 퍼즐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하며, 정답자 중 3명을 추첨하여 월간 <발명특허>지 1년 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독자카드에 정답을 적어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가	군
임	소
가	군
임	소
가	군
임	소

1. 예전과 지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
3. 조선 시대에, 특별히 왕의 명령이 있을 때 시행하던 무과(武科). 한량, 군관, 조관(朝官) 출신 모두 응시할 수 있었으며,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의 두 가지가 있었다.
4. 식구가 몇 안 되는 집안.
6.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로서,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그 범위는 고도에 따라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우주 공간은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9. 소나 말이 끄는 짐수레.
11. 바람 · 구름 · 고기 · 물이라는 뜻으로, 임금과 신하의 친밀한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숯불을 담아 놓는 그릇. 주로 불씨를 보존하거나 난방을 위하여 쓴다.
14. 가족이나 친척에게 나누어 줄 재산을 기록한 문서.
15. 돌에 글씨 따위를 새김. 또는 그런 조각품.

세	군
임	소
세	군
임	소
세	군
임	소

2. 금으로 만든 통소.
4. 흉수나 장마 따위로 재해를 당한 사람.
5. 지는 공윤(公胤). 호는 송촌(松村). 1899년에 경성 의학교를 세웠고, 일본에서 중두 제조법을 배워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두를 시행하여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였다.
7. ○○에 떠 있는 ○○이라는 뜻으로, 아무런 근거나 토대가 없는 사물이나 생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 뒷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여쭙어 알려 드림.
10.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회전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운동.
12.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 그 안에 온갖 물건을 담아 두면 끝없이 새끼를 쳐 그 내용물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화상의 단지를 이른다.
13. 어지럽게 갈래가 저서, 한번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오기 어려운 길.
15. 돌로 만든 여러 가지 생활 도구. 주로 선사 시대에 만들어진 돌 접시, 돌살촉, 돌도끼, 귀고리 따위의 유물을 이른다.

함께 풀어봅시다

1	2		4		5	
	3					
8					6	7
9	10			15		
			12			
11					15	
			14			

3월호 정답

솔	반		병	자	호	란
	도	거	리		기	
고			학		상	경
관	악	기		방		국
	연		건	배		지
방	실	방	실		배	사
	색		미	주	알	

## 우리회 · 서울교육대학교 MOU 체결



우리회와 서울교육대학교는 지난 3월 15일,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실에서 발명과 과학을 융합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우리회는 그동안 미래 발명인재양성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발명과학교실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발명콘텐츠를 과학교과에 접목하여 왔었다.

이날 체결식을 통해 서울교육대학교는 앞으로 우수한 학생들의 과학원리 실습을 통해 더욱 고급화된 과정을 제시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발명' 대학생이 한다

우리회는 대학 사회에 발명과 특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발명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창의발명대회(이하 대회)'를 개최한다.

특허청·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발명공모', '발명연구', '발명특허' 등 3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된다. 금년 대회에 처음 신설된 '발명공모' 부문은 산학협동형 발명프로그램으로서, 참여기업이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나 기술적 과제를 제시하면 대학생이 이에 대한 발명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명공모 부문에서는 녹즙·원액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휴롬엘에스(대표 김영기)에서 '기존 믹서기, 주스기 등의 고속회전에 의한 착즙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 등 2개 발명과제를 공모한다. 휴롬엘에스에서는 이 과제를 해결한 발명이 나올 경우 이를 제품생산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발명연구' 부문은 미완성 발명 아이디어를 제출한 후 이를 발명으로 완성하여 가는 과정과 결과를 거

## 2011 전국대학발명동아리 워크숍 개최



워크숍은 지난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라비돌 리조트(경기도 화성)에서 「2011 전국대학발명동아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학발명동아리 학생들은 지재권 교육 「특허정보 활용방안」(우리회 엄정한 변리사), 소양강의 「프리젠테이션 Skill」(카네기연구소 김은주 부소장), 전문가 특강 「엔지니어! 세상의 중심에 서라」(삼성전자 김용식 상무) 등 다양한 강의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대회 실전교육을 통해 2011년 대학창의발명대회 참여를 위한 대회 준비 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학생들은 대토론회를 열어 전국대학발명동아리 연합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루고, '발명특허' 부문은 졸업작품이나 논문 등으로 이미 완성된 발명을 제출하여 그 우수성을 겨룬다.

우수발명에 대하여는 대상인 국무총리상(상금 700만 원) 등 33건을 선정·시상하고, 발명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발명 아이디어와 발명품의 수준, 그리고 특허 보호방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대한기계학회(회장 유완석, 부산대), 대한전기학회(회장 김문덕, 한국서부발전(주)), 대한전자공학회(회장 김성대, 한국과학기술원), 대한화학회(회장 김낙중, 한양대), 한국화학공학회(회장 강인구, 이수화확(주)), 대한금속재료학회(회장 홍준화, 한국원자력연구원), 생화학분자생물학회(회장 이용성, 한양대) 등 국내 과학기술분야 7개의 전문학회 대표, 산업계 대표, 특허청의 심사관이 참여한다.

참가자격은 대학(원)생이면 3명 이내의 팀 단위로 전공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지도교수 확인서는 필수이다. 발명연구부문 참가 희망자는 5월 4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상식은 올 12월 22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 우리회 전북지부 '군산지식재산센터' 본격 업무 돌입



**군** 산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군산지식재산센터가 지난 3월 16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군산지사 내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이수원 특허청장과 김택수 전북상공회의소협회장, 정현울 전북도행정부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지식재산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이번에 문을 연 군산지식재산센터는 군산 입주기업과 전북 서부권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민원상담, 지자체 및 지역 발명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종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와 연계사업 개발을 통한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인프라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지역 R&D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브랜드·디자인 경영컨설팅, 개발 및 권리화 등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재권 교육, 지역발명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지역의 지재권 창출 기반강화 및 발명문화 저변 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회 전북지부 정승원 사무국장은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지회 제8대 회장 취임



**제** 8대 부산지회 회장에 박성용 동양라이트(주) 대표이사(우리회 비상근 이사)가 지난 3월 23일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취임했다.

신임 박성용 회장은 1985년 부산·경남발명인협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1986년 내무부장관표창·1989년 상공부장관표창·1995년 철탑산업훈장, 그리고 국내외 전시회에서는 금상 및 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또한, 전국의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14년 연속 강연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현재는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명예교수로 위촉되어 있다.

신임 박성용 회장은 취임사에서 “1시민 1발명 운동을 통하여 부산시의 발명하는 분위기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취임식에는 특허청 우종균 산업재산정책국장과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 부산시 관계자, 동부산대학 정연현 총장 등 각계의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하여 박성용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였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한 부산의 정관계 인사들도 축전을 보내어 박성용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였다.

## 2011 지재권 국제교육 'PADIAS 2기' 개강



○ 리회는 지난 3월 3일 제2기 '미국특허 출원서 작성 및 침해회피 전략(PADIAS : Patent Application Drafting and Infringement Avoidance Strategies)' 과정 개강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개강식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한국전력공사 등 국내 주요기업 소속의 교육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최중협 부회장은 "이번 과정이 기업의 해외연수 한계성을 극복하고 전략적인 국제출원 및 관리를 담당할 IP 전문가를 육성,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에 일조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2기 과정은 미국 로스쿨 교수 및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 CAFC 법원장 등으로 구성된 교수진으로부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특허출원서 작성 실습 및 강한 특허권 확보를 위한 침해회피 전략 수립, 현지 대리인의 출원절차 대응에 대한 평가 및 심사관 인터뷰 성공전략 전수 등 미국 IP 전문 로스쿨인 Franklin Pierce Center의 실무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정문의 : 02-3459-2767, 2772)

## 'CIPO(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 Academy' 개최



지난 3월7일 우리회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공동으로(후원 :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최초 지식재산분야 최고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1기 CIPO Academy' 입학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 자리에서 최종협 부회장은 “해당 과정이 우리나라 지식재산 분야의 확대 발전은 물론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통한 국부창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며 환영사를 전달하였다.

이날 입학식에는 지식재산 경영자로서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기업체 CEO 및 임원, 법조계 및 정책 입안자 등 교육생 전원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제2기 과정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과정문의 : 02-3459-2767, 2772)

# 3 월

##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회 원 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대 표 자 : 오태식
- 업태/종목 : 시험연구 서비스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 전화번호 : 02-2102-2500
- 홈페이지주소 : www.kcl.re.kr



- 회 원 명 : 아이존
- 대 표 자 : 장석중
- 업태/종목 : 제조/도소매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03 금호빌딩 701호
- 전화번호 : 031-701-9918
- 홈페이지주소 : www.vision365.kr

##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E-mail) : eldaah7@kipa.org

### 회원 동정 접수

-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 A4(1/2매, 글자크기 :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 eldaah7@kipa.org

###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TEL (02)3459-2797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차명진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편집 : 발명진흥팀 김민국 (Tel. 02-3459-2797, Fax. 02-3459-2799)



## 제2회 지식재산능력시험대비 교육

### ○ 오프라인 교육

- 교육특징
  - 출제범위와 교재 목차 구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
  - 접수대별 목표 교육 프로그램 구성
- 교육 프로그램

20,000원 상당의  
교재 무료제공

	기간	과정명	금액
1	4, 9 토 (10:00 ~ 18:00 / 7H) 4,16 토 (10:00 ~ 18:00 / 7H) * 12:00~13:00 점심시간 *	IPAT 입문 (14H) - 지식재산권 기본에 대한 이해를 목표	150,000 원
2	4,30 토 (10:00 ~ 18:00 / 7H) 5, 7 토 (10:00 ~ 18:00 / 7H) * 12:00~13:00 점심시간 *	IPAT 심화 (14H) -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실전에서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고득점을 목표	150,000 원
3	5,21 토 (10:00 ~ 13:00 / 3H)	IPAT 문제풀이반 (3H) - 단기간 집중 시험대비 문제풀이반	60,000 원

### ○ IPAT 무료특강

- 교육특징
  - 수시모집 (신청서 작성시 교육일정, 내용, 장소는 IPAT본부와 사전협의 후 진행)
  - IPAT설명 및 문제유형안내
  - 수요자가 원하는 분야 집중 교육
  - 15인 이상 단체 신청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 마감
- 교육형태 : 방문교육
- 교육 프로그램 (교재비 불포함)

★ IPAT을 알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과정명	교육시간	금액
1	IPAT 설명 (10분)	2시간	무료 (신청 선착순 마감)
2	문제 유형안내 (20분)		
3	맞춤 교육 실시 (9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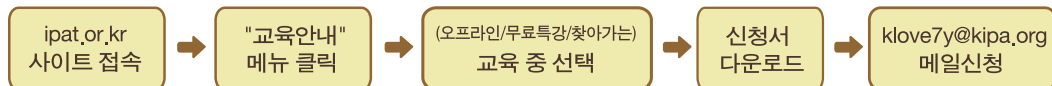
### ○ 찾아가는 교육

- 교육특징
  - 수시모집 (신청서 작성시 교육일정, 장소는 IPAT본부와 사전협의 후 진행)
  - '지식재산의 정석' 교재를 바탕으로 한 시험대비 특강
  - IPAT 강의 전문 강사진 구성
  - 지식재산능력시험 **단체 응시료 할인**
- 주요대상 : 지식재산능력시험에 관심이 있는 단체 (15인 이상)
- 교육장소 : 방문교육
- 교육 프로그램

20,000원 상당의  
교재 무료제공

	과정명	금액
1	IPAT 입문 (7H) - 지식재산권 기본에 대한 이해를 목표	80,000 원
2	IPAT 심화 (7H) -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집중교육	80,000 원
3	IPAT 실전문제풀이반 (3H) - 단기간 집중 시험대비 문제풀이반	60,000 원

접수  
방법





# 특허, 지적재산권 분쟁? 잠깐만요!



변호사 김치중

신중하게야 합니다!

## 든든한 해결의 길이 ‘법무법인 바른’에 있습니다

바른 원칙, 바른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은  
파트너변호사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책임지고 법률서비스를 펼칩니다.

서비스정신과 열정으로 자연스럽게  
높은 승소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8년 3월 5명의 변호사로 출범, 이제 국내 변호사 114명,  
외국변호사 11명 규모로 국내 로펌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특허, 지적재산권 분쟁은 물론  
송무 전 분야에서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ew Leader

법무법인 바른

www.barunlaw.com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3 메디슨빌딩 4~6층  
대표전화 : 3476-5599 대표팩스 : 3476-5995

### 특허 · 지적재산권 전담 변호사

- 변호사 김치중 : 특허법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10기
- 변호사 김재협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15기
- 변호사 김한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15기
- 변호사 최영로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16기
- 변호사 윤 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17기
- 변호사 송봉준 :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25기
- 변호사 유영석 : 사법연수원 35기
- 변호사 김수교 : 사법연수원 36기
- 변호사 김명환 : 사법연수원 37기
- 변호사 윤철중 : 사법연수원 37기
- 변호사 최재용 : 사법연수원 38기
- 변호사 윤화영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